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차 정기이사회

- 회의일시 : 2018. 1. 4(목) 11:00

- 회의장소 : 방송문화진흥회 회의실

- 참석이사 : 이완기 이 사 장
권혁철 이 사
김경환 이 사
김광동 이 사
유기철 이 사
이인철 이 사
이진순 이 사
최강욱 이 사 (8명)

- 불참이사 : 고영주 이 사 (1명)

제1차 정기이사회 속기록

【11시 00분 개회】

1. 성원 보고

○ 의장

- 간사는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재적이사 9명 중 고영주 이사를 제외한 8명의 이사가 참석하셔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가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개회 선언

○ 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경과 및 동정 보고

○ 의장

- 간사로부터 경과 및 동정 보고를 들겠습니다.

○ 간사

- 먼저, 사무처 업무보고입니다. 2016년 MBC경영평가가 MBC에 방송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오후 6시부터 5분 동안 방송이 되었고, 이 자료는 이사님들께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철 이사

- 몇 분 정도 했습니까?

○ 간사

- 5분 가량 됐습니다.

○ 이인철 이사

- 메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까?

○ 간사

- 메일로 이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셨으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저도 못 받았습니다.

○ 이인철 이사

- 저도 못 받았습니다.

○ 김경환 이사

- 저도 못 받았습니다.

○ 간사

-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안 보내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방송했는지 그 스크립트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지요?

○ 간사

- 그것입니다. 용량이 커서….

○ 김경환 이사

- 링크 거는 것 아닙니까?

○ 간사

- 그리고 2017년 MBC경영평가소위 2차 회의가 개최돼서 경영단이 구성됐습니다. 편성제작에 가천대 정인숙 교수, 보도시사에 충남대 김재영 교수, 기술에 항공대 정대권 교수, 경영에 단국대 방민석 교수, 재무회계에 오성회계의 변상호 회계사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연구사업검토소위가 조금 전에 개최되어서 올해 진행되는 연구사업에 대해 방향을 잡고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있었던 대표권이사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MBC 관련 동정입니다. MBC 시청률이 12월 4주차 핵심시간대 아직까지는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부터 <뉴스데스크> '취재윤리 위반' 관련해서 사과방송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대로 지인을 통해 일반인으로 인터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MBC 미보직 이사 다섯 분 중 세 분이 1월 1일과 1월 3일 각각 사임하셨고, 운동열, 김성근, 이은우 이사님이 사임하셨고 김도인, 최기화 이사님은 잠시 후 해임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계 동정입니다. 방통위가 지상파 3사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지난 12월 26일에

내렸습니다. 재허가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재허가 조건은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그리고 직원 징계제도 개선, 외주제작 거래관행 개선 등에 대해 각각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방통위에서 본회 고영주 이사님과 한균태 감사의 해임 안건이 올라가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 강규형 이사 해임 안건이 지난 12월 27일에 통과됐고, 오늘 역시 보궐이사 선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시청자미디어 재단 이사장에 신태섭 교수를 임명했고, KBS본부노조 파업을 잠정중단하고 예능/드라마 PD가 업무복귀해서 지난 12월 31일부터 주요 프로그램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이사님들 향후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고, 2월 1일 목요일 2시에 제3차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어서 MBC 상반기 업무보고 1일차, 2월 2일 금요일 2시에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서 2일차 상반기 업무보고를 각각 들을 예정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업무보고를 2시부터 하면 시간상으로 소화가 가능합니까? 전에도 보면 꼭 이렇게 하면 넘쳐서 밀렸습니다.

○ 권혁철 이사

- 2시부터 하시지요.

○ 의장

- 보통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시작하면 5시나 6시 정도에 끝나게 되지요. 조금 당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 최강욱 이사

- 전에도 2시에 시작하면 꼭 미뤄져서 다음 날로 넘어가고 다 못 끝난 적이 많아서 10시에 시작해서 하루는 하고 그다음 2일차를 2시쯤에 했던 것 같은데, 김광동 이사님 어떻습니까?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 김광동 이사

- 10시에 한 적도 있고 2시에 한 적도 있는데 그것은 판단사항일 것 같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다른 분들 괜찮으시면 2시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미뤄질까 봐서 그렇습니다.

○ 의장

- 어떻습니까? 10시에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있고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에 또 하고….

○ 권혁철 이사

- 2시에 하시지요.

○ 이인철 이사

- 하루에 되면 모르겠는데 몰아서 하루에 될 것이 아니면...

○ 최강욱 이사

- 그러면 2시에 하시지요.

○ 의장

- 그냥 2시에...

○ 최강욱 이사

- 예.

○ 김광동 이사

- 원만식 사장은 12월 31일 예정되어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최강욱 이사

- 전주MBC 원만식 사장님이 31일에 사표를 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 간사

-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하나씩 놓아드렸는데, 연말정산 서류 안내문입니다. 1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방송사 사장 건은 다시 확인해서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동 이사

- 관련 동정 두 번째 <뉴스데스크> '취재윤리 위반'과 관련된 사항인데, 과거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됐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김세의 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유사하거나 또 훨씬 문제가 될 만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 자체가 일반적인 보험을 어떻게 들었느냐, 자동차 사고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를 취재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인 개헌 문제를 가지고 동료기자 혹은 친구, 또 친구의 친구 이런 사람들로 개헌 문제를 편의적으로 잡아서 의도된 발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방송도 했고, 또 제3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또 사항의 위중성에 입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결과를 받으시고, 또 받은 결과를 가지고 MBC 측에 보고해 주기를 촉구 드립니다. 서둘러 진행시켜 주실 것을 이사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의장

- 예.

○ 최강욱 이사

- 저도 동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제천소방서 관련해서 오보가 있어서 사과하는 것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자기 친구, 친구 와이프 내세워서 관련 보도하고 나서 사과방송은커녕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그나마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일이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MBC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라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기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확실한 대안까지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 김경환 이사

- 이것을 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지요?

○ 간사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방송학회입니까? 언제 결과가 나오니까? 꽤 걸릴 텐데….

○ 이인철 이사

- 전체 정기보고는 2월인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늦은 것 같고, 일단 자체적으로 내부 정리된 것만이라도 다음 정기이사회가 18일에 있으니까 보도본부장이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어떻게 됐는지 경위, MBC 자체에서 파악한 내용이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 특히 최근 개편하고 나서 초반부터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보도 담당자가 더욱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정기이사회 때 한번 오시도록 해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혁철 이사

- 제가 본 것은 벌써 3건입니다. 1건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제천 화재 문제도 사과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인턴기자를 일반 대학생으로 속여서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작년 12월 9일에 전자담배 인터뷰를 하는데 본사 직원을 인터뷰이로 해서 일반 전자담배 소비자인양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며칠 사이에 계속 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것이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의도된 것인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김세의 기자 건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방문진에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벌써 몇 건이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입니다.

○ 의장

-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께서는 MBC에 요청을 해서 일단 18일에 보도본부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권혁철 이사

- 감사 신청은 하지 않습니까?

○ 의장

- 감사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서,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해야겠지요.

○ 최강욱 이사

-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하시지요.

○ 권혁철 이사

- 좋습니다.

○ 의장

-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대표권이사 변경등기는 사인을 지난번에 하지 못했는데….

○ 감사

- 그것 없이 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사인이 불필요했었던 것입니까?

○ 감사

- 연말에 담당자가 계속 쫓아가서 했습니다.

○ 권혁철 이사

- 뭐가 문제였던 것입니까?

○ 감사

- 문제라기보다는 등기 담당자가 곤조라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까?

○ 간사

- 지나치게 엄격할 정도로, 통상적으로 보면 감사님 사인이 없어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것 말고….

○ 간사

- 그것을 해 가면 다음 것 다음 것 해서 자기가 마지막 임기가 되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 이인철 이사

- 공무원 행위를 그렇게 공개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됐다가 갑자기 또 됐다고 하니까….

○ 최강욱 이사

- 큰 문제가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고, 그때 소집하는 절차에 대해 시비를 걸어서 회의록에 남겨 달라고 해서 추가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이야기를 요구하다가 본인이 철회한 것 아닙니까?

○ 간사

- 본인이 철회한 것입니다.

○ 이인철 이사

- 어떤 소집절차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 간사

- 회의록에 보면 이사회 개회를 어떻게 했는지 적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회의록 기준에는 불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이 판단해서 넣어 주면 해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 기준에도 맞지 않아서 그런 것을 가서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처리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소집 경과 없이 바로 우리 이사회 회의록 가지고 됐다는 것입니까?

○ 간사

- 특별한 것 없이 처리했습니다. 결국은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했다는 결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4. 결의사항

1) 사무처장 징계 결의건

○ 의장

- 다음은 '사무처장 징계 결의 건'입니다. 먼저 회의공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철 이사

- 공개하시지요. 여태까지 해임 절차 쪽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공개했으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순 이사

- 동의합니다.

○ 최강욱 이사

- 공개하시고, 본인이 혹시라도 신상 관련해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로 해야지요.

○ 의장

- 그러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무혁 처장 입장하기 전에 인사위원장이신 유기철 이사가 안건을 설명해 주십시오.

○ 유기철 이사

- 안건은 제가 의견을 줘서 사무처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경과'를 쪽 썼는데, 핵심은 사무처장의 지위가 임원이나, 직원이나?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신분으로 보이는데 애매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페이지 '안건의 내용'을 쪽 보셨겠지만, 사무처장이 그동안 이런 규정에 의해 부적절한 업무수행이 있었고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직 수행과 사무처의 제반 업무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의 직무수행이 불가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방문진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계를 심의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위예까지 일부 인사위원께서 징계사유가 구체성이 없고 또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처장의 지위가 임원이나, 직원이나, 특수직이나에 상관없이 일단 규정 위반을 항목별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징계 부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서 직원 것도 원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쪽 보시고 징계할 것인가,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논의하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첨부로 그동안 메일로도 보내드렸던 징계 사유서와 김광동 위원님이 내셨던 소수의견 검토도 붙였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안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 임무혁 처장 소명을 듣고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김광동 이사

- 아닙니다. 지금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 이인철 이사

- 인사위원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제안에 대한….

○ 의장

- 좋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지금 사무처장 징계 결의 건의 징계 사유와 관련해서 3페이지 요약으로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초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유기, 허위발언, 정파적 업무태도, 이사회 결의 무시와 월권, 업무태만, 불경한 업무태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 지적했습니다만 3페이지, 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아시듯이 '거짓말로 이사를 음해했다', '둘러대고 아니면 말기를 했다',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기를 했다', '인터뷰 조작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다', 또 '정파적 업무를 취했다', '같은 편이면 무조건 덮어준다' 4페이지에 '이사회 안건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업무 태만이다', '잘못하고도 억지와 궤변을 부렸다', '영터리 보고를 했다' 마지막 5페이지에 보시면 '불경했다', '광고는 사무처 마음대로 했다', '접대와 향응의 거간꾼이다' 제가 반복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처장의 징계 사유 내지는 법적 책임을 묻는다고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비난 혹은 명예훼손, 내 마음에 안 든 것에 대한 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 사유는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명백해야 하는데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를 이야기하듯이 뭐가 명백한 위반이냐를 다투지 않고 불경하다, 마음대로 주물렀다, 정파적이다, 태만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징계한다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밝혀드렸듯이 본인의 부정적 판단과 부정적 이해 혹은 주관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하게 판단사항이 될 만한 것, 직무유기가 있었다, 혹은 이사회 결의가 무시됐다,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소명

절차를 통해 규명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위중한 것이고 어떤 징계를 받을 만큼 커다랗게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규명과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인철 이사

- 저도 한 가지 절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동 이사가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저도 해임 사유를 받아보고 나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은 면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보통 해임 사유로 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위반이나 업무상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난 임기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쪽으로 비난성 주장들만 내세워서 우리가 해임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의 직무에 대한 사유를 논하는 것을 벗어나서 한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보면 사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해임 사유가 될 것과 되지 아니할 것들을 분명히 가려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일단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하나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거론할 자리 자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처장은 특별 채용되어서 이사장을 보호해서 이사회 간사로서 역할을 한 특별 채용직인데 결국은 이사장님께서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는 것이고, 저는 절차상으로는 해임할 경우에도 결국 이사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이라도 너무나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은 사유를 가지고 논하는 것보다도 이사장께서 다시 한 번 사무처장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선행됐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김광동 이사도 말씀하셨지만, 해임 사유를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일이라서 그런 쪽의 그 2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 최강욱 이사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임사유가 특정되지 않고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당할 정도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문명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표현까지 쓰시는데, 과거에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은 구 경영진들이 참 많이 했지요. 그 과정에서는 전부 다 변호하는 데 급급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문명국가를 운운하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서글픕니다. 그때 익히 다 알고 계시지요? 자기들이 고소해 놓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강제로 휴직시킨 행동에 대해 일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말씀하실 게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그렇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점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불경스럽다, 업무에 태만했다, 정파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들이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지 않느냐, 판단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런 사유 없이 사람이 불경스럽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한 것이어서 어떤 사유로 삼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앞에 적시된 사실관계가 있고 그것에 따라 이러한 판단을 인사위원회 혹은 인사위원장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관계를 놓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는 사실관계와 평가의 문제가 서론과 결론으로 종합되어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직무유기다', '건의를 무시했다' 이런 것들은 평가가 아닙니까? 그것도 결국 사실관계에 바탕을 둔 평가인 것입니다.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 할 일이고, 지금 사유로 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 사실관계들이 있고 그것에 따른 평가는 각자 다를 수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본인의 소명을 듣고 논의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 단계와 심의 단계와 결정 단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인의 소명과 또 논의 과정을 거쳐 여기에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 이것은 결정 단계에서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배제하고 결정문에만 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절차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면 임원은 방통위에서 임명한 이사와 감사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으로서는 간주할 수 없고, 그렇지만 사무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방문집법에 규정되어 있고 정관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걸친 이사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해임할 때도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절차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소명까지 듣는 것은 당사자의 반론권이나 적법 절차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문명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인의 반론권을 침해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본인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입장,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 이인철 이사

-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사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원래 소명을 듣는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여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논해서 절차를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의장

-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속기록 자료를 이사님들 앞에 다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다 읽어보셨지요?

○ 이인철 이사

- 대충은 봤는데 문제는 속기록 발언도 발언이지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단순히….

○ 의장

- 그 부분들은 소명할 때 입장을 물어보면 되지요.

○ 이인철 이사

- 입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규명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의장

- 여기에서 사실 규명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요.

○ 이인철 이사

- 제가 그것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규명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해임 사유로 내걸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소명 절차를 밟으실 것인지, 그냥 변명 듣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하시면 소명 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 최강욱 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그것을 한번 여쭙보는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지금 소명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가시니까 소명과 입증, 증명의 차이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혹 그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 징계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의 위치가 임원에 준하는 직원의 신분으로 특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사례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사무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떼어 내어서 예를 들어 향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이슈가 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소명, 또 입증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되는 것이 사유를 완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종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어느 기관이나 징계 사유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 태도나 자세 그다음에 구성원들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가 혐의로 제기되어 있고 그런 사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의혹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그리고 외부의 객관적인 어떤 취재나 확인을 통해 규명될 수 있다면 충분히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의 소명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 소명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확인해서 증거를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럴 필요가 없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면 징계 사유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미치지 못한다면 징계 사유에서 나중에 최종 결정에서는 빼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권혁철 이사

- 저는 해임과 해고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임원이나, 직원이나 그 부분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해임이라고 하면 해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해임의 사유가 타당하냐, 좀 더 구체적이냐는 말씀들을 이 이사님이나 김 이사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사유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들이 사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사유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해임이나 해고에 준할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엄중한 것이냐는 부분은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의장

- 이사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권혁철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들은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오늘 논의하는 과정 자체가 그것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따져보는 시간이니까 일단 임무혁 처장의 소명을 들어보고, 징계 사유는 임무혁 처장에게 다 전달이 됐고 읽어 봤을 테니까 소명을 듣고 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시지요. 임무혁 처장 입장시키시지요.

(임무혁 사무처장 입장)

사전에 통지해 드린 대로 오늘 이사회가 임무혁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상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무유기, 허위발언, 정파적 업무태도,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월권한 행위 그리고 업무태만, 불경한 업무태도, 접대와 향응수수 등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오늘 인사위원회는 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공개하기로 결의했는데 혹시 임 처장께서 비공개를 원하신다면 희망하는 대로 비공개로 해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 의장

- 그러면 시작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24가지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무유기 관련해서, 첫째 자금운용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매년 말 이사회에서는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에는 MBC로부터 받는 법정출연금, 배당금, 자금운용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지출예산은 사업 건건이 하나하나마다 사업비와 경상비, 예비비를 설명 드립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창립된 이후에 예산안 심사 시 입금된 자금액과 지출되는 자금액을 자세히 심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적은 30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방문진 이사님들께서 예산 보고 시 자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2016년 별도의 자세한 자금운용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 창립 이후 처음으로 2017년 2월 2일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의를 득하였습니다. 징계사유에는 '직무유기'라고 되어 있는데 정관 제20조입니다. 정관 제20조 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가 있습니다. 제10조는 이사들이 의결해야 할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자금을 이렇게 협의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사무처장이 물론 업무 해태한 것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방문진 이사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방문진법 제10조와 정관

제2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 하에서 사무처장이 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자금은 3개 정도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확정금리상품에 10% 정도 예치하고 있고, 국공채 50~60% 그리고 파생상품이 30% 정도에 분산 예치하고 있습니다. 확정금리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6~7개 정도의 증권사, 은행, 투자금융사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 의장

- 임 처장님, 잠깐만요.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소상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징계 사유로 나온 것은 이사회 결의사항 중 하나인데 그동안 사무처장께서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결의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로 나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여기에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이사장님, 저는 앞에서 소수의견으로 말씀드렸습시다만 직무유기는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그다지 소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직무유기, 또 직무유기 중에서도 다른 부분보다는 자금운용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은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 의장

- 이사회 결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이 부분에 관한 소명은 명확하게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회 결의 무시'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게 사실관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손바닥 뒤집기를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음해다, 정파적이다 이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의견이고 이사회 결의 무시가 있었느냐와 자금운용계획 수립의 직무유기가 있었느냐는 것은 사실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이 소명이라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 의장

- 지금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임무혁 처장이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소상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소명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요. 왜 그렇게 됐는가를 설명해야지요.

○ 의장

- 임무혁 처장이 그 부분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확정금리상품과 파생상품은 6~7개 견적을 받아서 유리한 상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 예치 시 모든 견적서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장

-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또 자꾸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 임무혁 사무처장

-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연 자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했는가?

○ 의장

- 지금 중요한 본질은….

○ 임무혁 사무처장

- 징계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징계사유로 해 놓고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못 하게 하시면….

○ 의장

- 하십시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이사장님도 이사장님 되시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을 예치할 때는 견적을 받은 것을 순서대로 다 하지, 이사장이나 사무처장이나 실무자가 들어갈 만한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 사무처장으로 취임한 이래 특정 금융사나 특정 상품에 예치를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여쭙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입니다. 북한주민 방송지원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북한주민 한국방송 시청확대 사업은 9월 7일 심사결과 자유북한방송, 통일미디어, 북한발전연구원,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4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특정 사업의 타당성이나 평가 및 선정 업무는 방문진 이사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일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 중 이사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 사업은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9월 7일 심사 결과를 가장 빨리 개최되는 9월 22일 이사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 적도 없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김광동 소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입니다.

○ 의장

- 9월 22일에 보고했다는 말씀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관련입니다. 이사회규정 제7조에 의하면 간사는 의안을 제출받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이사회에 상정한 대장에 기록하고 부의번호를 표기하고 의안 사본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을 통한 안건 제출을 요청 드린 것입니다. 구두로 하면 저희들이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사장 결재를 받으며 상정한 대장에 기록할 수 없을 뿐더러 부의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관련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간사인 사무처장이나 이사회 담당 직원이 당시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허위발언 관련입니다. 거짓말로 이사를 음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일 국정감사장에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최민희 의원이 모 방문진 이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동명의 방문진 이사께서 동일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을 뿐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거나 녹취록 파문을 무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폴리뷰 박한명 관련입니다. 백종문 녹취록 관련해서 2016년 3월 17일 당시 백종문 본부장이 이사회에 출석해 녹취록 관련 보고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16년 6월 2일 백종문 본부장이 다른 건 보고 시 일부 이사께서 녹취록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박한명 씨가 MBC에 출연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고 한번 정도 출연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듣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경영평가 소위 관련입니다. 2015년 MBC 경영평가 소위는 김광동 이사, 유의선 이사, 이완기 이사로 구성되었고, 2015년 11월 19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유의선 이사가 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경영평가 소위 2차는 2015년 12월 3일 오후 5시 50분~6시 20분까지 열렸습니다. 당시 제가 다른 소위가 중복해서 열리는 관계로 경영평가 항목을 설명하던 중 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위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경영평가단을 약 3배수로 결정했고 기술 분야는 이완기 이사께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중반에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다시 결과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을 뿐입니다. 다음 김세의 기자 인터뷰 조작 관련입니다. 2016년 10월 6일 방문진 이사회 결의로 김세의 기자 보도 의혹 관련해 MBC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방문진 이사장 명의로 감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1일 감사국에서 1차 성문 분석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2개만을 의뢰하게 됩니다. 왜 2개를 의뢰하느냐 하면 감사국에서 영상 쪽에 가서 파일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파일이 날아간 상태였기 때문에 파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만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결과, 인터뷰 내용이 8초와 11초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가정 하에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국에서 그 이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동조합에 방송되지 않고 기 삭제된 파일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만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미 삭제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구했고 노조에서 그 자료를 찾았기 때문에 2차 성문 분석에서 3개가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1차에서는 파일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2개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 의장

- 그 사실관계가 차이가 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정확합니다. 이것은 감사실에 요청해 보셔도 되고 감사님을 불러서 요청해 봐도 압니다.

○ 의장

- 감사가 이 자리에 와서 보고하면서 이야기한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런데 이것은 팩트입니다.

○ 의장

- 그것이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 임무혁 사무처장

- 파일이 3개가 없었던 것이 뭐냐 하면 2개는 남아 있었는데….

○ 의장

- 알겠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정파적 업무태도 주장 관련입니다. 첫 번째, 국감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2015년도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관련한 보고는 2016년 4월 7일 제1차 보고가 있었고, 2016년 5월 12일에 제2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1차 보고 시에 이사님들의 의견을 받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제2차 보고 시에는 속기록에 대한 논의보다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논의가 많았고 최종 표결에 의해 원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시 여당·야당 구분 없이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수없이 노력 하지만 저희들이 정파에 치우쳐서 여당에게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야당에게는 주지 않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 의장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파적 업무태도와 관련해서 여기 이사 분들은 잘 모르실 것이고 임무혁 처장과 저와 사무처장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의장

-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의장

- 그 자리에서 방문진 속기록 보존과 관련해서 회의공개 원칙을 지키라는 국정감사 조치가 내려 왔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내려왔습니다.

○ 의장

- 그것에 대해 임무혁 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것은 야당 의원의 주장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답변한 것은 뭐냐 하면 야권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여권에서는 속기록 공개하라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 의장

- 팩트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야권의 주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 의장

- 그러니까 고성이가 오간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님들 잘 알다시피….

○ 의장

- 그것을 여기에서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와 임무혁 처장 둘이서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논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것이 뭐냐 하면, 속기록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권 이사님들께도 제가 어느 정도 “속기록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 의장

-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당시 임무혁 처장의 태도는 속기록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임무혁 처장은 사무처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입장으로서는 국회의 어떤 조처가 내려왔으면 그 조처를 충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야권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 의장

- 그래서 업무태도에 정파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지만 제가 야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안 받고 여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의장

-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야권의 주장이니까 어찌란 말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사무처에서는 충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저는 그 당시에 팩트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 의장

- 팩트를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국회에서 내린 결정이 야권의 주장이고 여권의 주장이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총괄적으로 내린 결정이면 결정이지요.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음 또 설명하십시오.

○ 임무혁 사무처장

- 연구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김원배 전 이사 따님이 연구지원 사업에 지원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처장은 평가에 관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은폐할 이유도 없고 은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 사무처장이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사장과 사무처장이 공모했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당시 방문진 내부 자료가 외부에 외출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사장님 지시로 직접 열람은 가능하되, 이메일 자료는 드리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5월에 인지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다음에 SNS 사전 유출 관련입니다.

○ 유기철 이사

-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분은 저와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공모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공모해서 그분을 뽑아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사장도 모르고 사무처장도 모르고 소위원들도 몰랐는데 훗날 미디어오늘 매체 보도로 인해 추후에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공모했다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5월 이 소리는 증언자가 있고 확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룰 때 따로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하십시오.

○ 임무혁 사무처장

-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 유기철 이사

- 지금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 의장

-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11월 17일 그 이전 이사회에서 속기록 관련된 파일을 이사들에게 전달한다,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논란이 돼서 거기에서 결의된 사항이 "앞으로 속기록은 이사들에게 파일을 주지 말고 사무처에 와서 열람만 해라" 이렇게 결정된 것 동의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 그런데 그 이후 유의선 이사에게는 속기록을 파일로 줬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다른 아이টে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 최강욱 이사

- 3항의 <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다른 부분이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사실관계를 사무처장과 고영주 이사장은 5월에 사전 인지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9월 8일에 매체에 의해서 보도되었다, 그러면 사전 인지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하십니까?

○ 유기철 이사

- 추후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유기철 이사

- 여기의 주제는 뭐냐 하면 모르고 실수할 수 있지요. 실수해서 알게 됐으면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에게 확인해서 환수한다거나, 이것이 잘못되고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물증 관계는 추후에 제가 다시...

○ 이인철 이사

- 오늘 결정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니까?

○ 유기철 이사

- 오늘은 못 하지요.

○ 이인철 이사

-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 유기철 이사

- 온갖 시비를 다 거시는데 알겠습니다. 당신은 판관도 아니니까 계속 하십시오.

○ 임무혁 사무처장

- 어느 분이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사장과 사무처장은 의혹을 덮어주려는 은폐를 공모함으로써 방문진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전혀 은폐할 이유도 없고 은폐하지도 않았습시다. 내용을 모릅니다. 다음입니다. SNS 사전 유출 관련입니다. 엠바고라는 것은 언론이 취재원과 합의해서 언제 보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지, 기밀은 아닙니다. MBC 일부 임원에게 팩트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이미 언론에서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그 이후 대화장에서 제가 그분들과 대화하거나 어떻게 대책을 수립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엠바고 내용은 뭐냐 하면 2017년 2월 23일 사장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면접 관련 속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제8조 제6항에 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본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전체를 언론에 누설하는 잘못이 있었고, 특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제6항 제3호, 이사회 규정 제10조 제6항 제3호, 회의공개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1항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한 것이 잘못이지, 엠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보도를 하라고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속기록 제공 관련입니다. 이것이 그 부분입니다. 유의선 전 이사께서 몇 번에 걸쳐 속기록을 담당자에게 요청했고, 그리고 담당자가 저에게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직접 열람이 원칙이라 말씀드렸지만 학교 업무로 인해 도저히 직접 열람이 불가하니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몇 번에 걸쳐 요청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해서 제가 이사장께 “유의선 이사께서 여러 번에 걸쳐 속기록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드렸더니 당시 이사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1차이고, 그것이 한번 딱 보내고 외부에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완기 현 이사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저는 호혜평등의 원칙이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권·여권 관계없이 여권에 주면 야권에도 주어야 하고 야권에 주면 여권에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7년 2월분 2월 2일 속기록, 2월 16일 속기록, 2월 23일 속기록, 2월 27일 속기록을 이사장님 허락을 받아서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자가 이완기 현 이사장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사장과 사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의선 이사님께 속기록을 전달한 바가 있고 동일한 취지로 전달하며 대외 유출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완기 이사장님은 당시 유의선 이사님께 속기록이 간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유출하지 말아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드렸습니다. PT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해하셨지요? 당시에는 속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속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되어 있었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원칙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사 관련 자료는 규정상 비공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은 이사장의 허락을 받고 속기록을 전달했을 뿐, 사규를 위반한 사람은 기밀을 요하는 인사를 포함한 파일 전체를 통째로 외부에 전달한 특정 이사입니다.

○ 의장

- 그것 관련해서 설명이 끝났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러니까 당시에 파일이 이메일로 나간 것이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유의선 이사님께 한번 나갔고 이완기 이사님께 한번 나갔고 딱 두 번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셨듯이 그 전 이사회에서 속기록은 열람하기로 했고 이사들께 파일로 주지 않기로 결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졌는데, 유의선 이사께 파일을 줬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의장

- 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열람하기 위해 김재성 차장에게 “열람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재성 차장이 “이제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무처장과 이사장님이 결의해서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냥 파일로 드리겠습니다” 저 내용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의장

- 그래서 저도 파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더니 처음에 사무처장은 이사장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분명히 이사장님 승인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 의장

- 2017년 4월 20일 정기이사회입니다. 2~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더니 “고영주 이사장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답변했고, 사무처장은 “이사장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거짓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곤란에 처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 의장

- 곤란하면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속기록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작성해야 한다고 봤고, 속기록은 외부 이사님들에게도 다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사장님께 허락을 받아서 두 분 이사님께 보내드렸고 그 이후에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케이스로 인해 이사장님이 곤란에 처하셨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속기록을

주지 말라고 결론을 또 냈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 다 좋은데 임무혁 처장은 어떤 상황에는 주고, 어떤 상황에는 주지 않고 그것을 나름대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것 아닙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 의장

- 그러니까 이사장에게 물어본 것이고, 그렇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의장

- 유의선 이사가 자꾸 요청하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사장에게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니까 임무혁 처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결정한 것은 일단 속기록에 대해 요청이 와서 열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무처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의장

- 그러면 분명히 이사회 결의사항을 임무혁 처장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속기록 문제가 전말이 다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모른다고 했던 고영주 이사장께서 이 자리에서 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자백은 아니고, 분명히 제가….

○ 의장

- 자백을 했지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고 임무혁 처장도 “이사장님 모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는 다 이야기한 것이지요, 다 들통이 나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 의장

- 그런 상황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사무처장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사장님의 허물을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기록에 대해 작성해야 하고 완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 이사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그분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 의장

- 승인을 받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 그러면 승인 받았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거짓말을...

○ 최강욱 이사

-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 논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응답 과정에서 또 한 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 계속 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회 안전 관련입니다. 이사회 안전은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방문진 사무처에서 일어난 모든 사소한 일까지 다 이사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일단 7일 전에 안전을 확정하고 이사장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안전 제목과 순서, 내용 등을 정해 주시면 결재를 통해 확정하고 각 이사님과 감사께 전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주민 한국방송 시청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회 개최 7일 전까지 안전을 명시하여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7일 전까지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도 안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일 일부 이사께서 안전 통보 일정 관련해 문의를 하자 의장이 “규정에 5명이 동의하면 바로 즉석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당시 문제제기했던 이사님께서도 “규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여쭙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차별 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라고 해서 문제없이 안전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포가 늦어진 것은 안전이 4월 6일에 작성되어서 사무처에 미리 보내지지 않았고 직접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경영평가 소위원회 관련입니다. 2015년 경영평가는 2015년 11월 19일에 소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김광동 이사, 유의선 이사, 이완기 이사께서 소위 위원이었고 논의

끝에 유의선 이사님께서 소위원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일 제2차 소위가 열렸습니다. 전차 회의 결과 보고가 있었고, 경영평가 항목 설명이 있었고 경영평가단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방송1, 방송2, 경영, 기술, 재무회계 부문에 2~3명의 전문가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야는 이완기 이사께서 추천하는 분을 우선 섭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1월 15일입니다. 경영평가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방송1에 최현철 교수, 방송2에 윤영철 교수, 경영에 권혁대 교수, 기술에 김광호 교수, 재무회계 최관 교수가 선정이 됐고, MBC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품의했습니다. 2016년 1월 18일 방문진 소위와 경영평가단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경영평가 개요 설명을 했고 경영평가 역점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이완기 당시 이사께서 과거 경영평가의 문제점, 현 경영과 방송의 문제점, 인력구조의 문제점, 경력사원 채용의 문제점, 노사 문제 등에 대해 조금 길게 문제제기 하셨습니다. 경영평가단에는 당시에 언론학회장이 두 분 계셨습니다. 부총장이 한 분 계셨고, 회계학회장 등 중량급이 포진하고 있었고, 이미 공영방송사 경영평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평가는 집필진이 작성하고 방문진 소위에서 감수하되 크게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필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문제점 지적과 요청사항에 당시 집필진이 당황한 빛이 조금 있었습니다. 곤혹스러운 빛이 역력했는데, 시간도 많이 흘러서 제가 이완기 이사께 “경영평가 보고서 집필은 평가단 몫입니다. 너무 많은 지적과 요청은 바이러스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다음 사무처 인사 관련입니다.

○ 의장

- 정확한 위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말씀하십시오.

○ 의장

- “왜 평가단에 바이러스를 주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소리로 이야기했지요? 고성을 지르면서.

○ 임무혁 사무처장

- 고성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시다.

○ 의장

- 고성으로 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어떻게 고성으로 말씀드립니다까? 거기에 집필진도 다 계시는데 어떻게 고성으로 말씀드립니다까?

○ 의장

- 그것을 여기에서 부인하면 곤란하지요.

○ 최강욱 이사

- 있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본인의 권리이고 나중에 부인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 의장

- 좋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사무처 인사 관련입니다. 인사규정 제5조에 의거 “일반직 직원의 임용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정권자는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규정 개편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그러나 세칙, 내규 등은 이사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김자영 씨는 당시에 계약직으로 입사한지 4년이 지났었습니다. 2년 계약직에서 다시 한 번 계약을 연장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됐고 4년간 업적, 태도,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인사고과에서도 우수했습니다.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나 적극적인 업무태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방문진 노동조합에서도 일반직 전환 추천을 요청했고, 조직 내 제가 많은 사람들과 거의 대부분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정부에서도 정규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으나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내규가 필요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에 관한 내규를 만들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두 분의 이사가 정규직 전환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이사는 보류로 결론을 냈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서 일반직 전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유기철 이사

-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소위원장이 회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다수결 표결한 적도 없고 그렇게 궤변하시면 안 되지요. 있는 것은 인정하시고 이야기해야지, 제가 언제 소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습니까? 안 된다고 하고 나갔으니까 그 회의는 무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무효가 아니지요.

○ 유기철 이사

- 왜 당신 마음대로 그것이 무효니 아니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당시에 두 분은 찬성했고….

○ 유기철 이사

- 제가 정리 안 했으니까 결론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결론이 안 난 것이 아니지요. 두 분이 찬성한 것이지요.

○ 유기철 이사

- 그러면 회의가 해서 안 됐는데 이사장이 방망이 안 두드리고 나갔는데 여기에 다수가 있으면 그것이 통과가 되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사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를 했고 결재권자는 이사장입니다.

○ 유기철 이사

-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왜 합니까? 이 이야기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규정을 왜 어겼습니까?

○ 유기철 이사

- 인사위원회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이사장 결재만 받은 것 아닙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 유기철 이사

- 그런 형식논리라면 인사위원회는 하지 말지 왜 합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사위원회에서 세 분이 다 부결이 났을 경우에는 못 하는 것이지요.

○ 유기철 이사

-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가 그렇게 필요 없다는 논지를 펴면 이것을 뭐 하러 거쳐 인사위원회를 합니까? 그냥 이사장에게 도장을 받으시지.

○ 이인철 이사

- 쌍방 주장을 다 들었으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참석하신 이사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 **유기철 이사**
 - 있는데, 회의 진행이 안 된 상황 아닙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두 분이 찬성했지 않습니까?
- **유기철 이사**
 - 자기 주장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인정하고 이야기해야지요. 그렇게 엉뚱한 식으로 비틀고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왜곡한 것이 없습니다.
- **유기철 이사**
 -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의가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무엇이 통과가 됐다는 것입니까? 제가 당사자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저희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니까….
- **이인철 이사**
 - 주장하는 자리니까….
- **유기철 이사**
 -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팩트에 대한 판단이나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이야기해야지요.
- **이진순 이사**
 - 어쨌든 인사위원장이 중간에 회의를 종결하고 나갔어도 나머지 인사위원 두 분이 동의해서 이사장이 그것에 대해 추인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추인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규정 제5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진순 이사

- 이 이야기는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인사위원장이 중간에 회의 종결하고 나갔어도 남은 인사위원들이 결정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품의가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면 당시에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이 찬성했고 한 분은 보류라고 인사위원회 결과를 알려드렸고, 이사장님께서 품의에 사인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런 과정으로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 의장

-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규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사실 내규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평가결과를 한번 더 거치자고 해서 며칠 전에 내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 내규가 없으면 어떤 근거로 해서 규정들이….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사규정에 의해 하는 것입니다.

○ 의장

- 인사규정에 근거가 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근거가 있습니다.

○ 의장

-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채용 등 다 있지요.

○ 의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인사규정에 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냥 채용입니다.

○ 권혁철 이사

- 이것이 그때 당시에 처음 실시됐던 것이기 때문에….

○ 의장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거가 있으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의장

- 그러니까 내규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권혁철 이사

- 그렇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래서 내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 의장

- 내규를 언제 만들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며칠 전에 만들었습니다.

○ 의장

- 며칠 전에 누가 만들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실무자가 만들었지요.

○ 의장

- 내규를 실무자가 만들 수 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할 수 있지만 내규는 이사장의 결재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그러면 내규를 언제 누가 만들었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 만들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알 수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김경환 이사

-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 권혁철 이사

- 내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내규 없이 했다면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트집 잡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볼 때 내규를 작성해서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아까 유기철 이사님 인사위원회 흠결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 내용에서 이야기될 것들은 다 됐고 두 분의 이사께서는 분명히 찬성하셨고 유기철 이사님께서서는 못 하겠다고 하고 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것이 흠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의장

- 다음 설명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업무태만 주장 관련입니다. 첫 번째, 속기록 확인 관련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이사회에 저와 이사회 담당자 두 사람이 참석합니다. 사무처장은 이사회 성원 보고, 동정 보고 및 매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사회 담당자는 이사회 소집, 회의록 작성과 이사회 중 이사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무처장이 요청한 자료를 보내드린 것을 대부분 확인하지만 그 당시 전달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자료를 전달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무처장이 자료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사회 담당자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담당자가 전달하게 됩니다. 단지 이사회 담당자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진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 관련입니다. 방문진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2015년 말에 시작해서 2016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방문진 소개, 정보공개, 예를 들면 이사회 회의록이나 업무추진비 등이 있었고 주요사업, 연구보고서와 총서 등 정보자료, 자료게시판 등을 리뉴얼 했고, 과거 자료를 업로드 해서 올렸습니다. 이사회에서 해외출장 자료 업로드 요청이 있었고, 저도 담당자에게 여러

번 재촉을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MBC 전 감사 퇴직공로금 관련 지급 건입니다. MBC 임원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은 방문진 이사회 결의와 주총 결의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에 MBC 총무부와 정책협력부 사이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총무부에서 정책협력부에 퇴직공로금 자료를 전달하지 않아서 방문진 이사회 안건으로 접수되지 않았고 바로 2016년 3월 20일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습니다. 주총 현장에서 이사장님이나 사무처장 모두 퇴직공로금 지급 건은 처음이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총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치유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MBC나 방문진 내부 절차에 대한 흠결이 있지만 법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공로금을 하자에 흠결이 있어서 전달했습니다만 그것을 회수 요청했을 때 퇴직공로금을 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총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대항할 수 없다는 요지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2일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고 이사장은 임진택 전 감사 퇴직공로금 관련한 주총 의결은 단순 실수였다고 사과를 했고, 동년 5월 19일 MBC 안광한 사장이 출석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것으로 표결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감 수감 관련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 수감 결과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7일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서 일부 이사께서 속기록, MBC 관리감독, 이사장 법인카드 사용, 해외출장 등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사무처에서 수정 후 재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2일 제9차 정기이사회에서 2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완기 이사, 유기철 이사, 이인철 이사께서 의견을 첨부해서 격렬한 토론을 거쳤고 표결을 통해 원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사님들께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를 방통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 제가 공개의 범위나 기준이 기관마다 일정하지 않다, 그러나 방문진 수준이면 유관기관, 여기에서 유관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BS 이사회와 동등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다음입니다. 국감 자료 허위보고 관련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무처장 징계 사유에 사무처장이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이사들에게 무조건 충성해서 연임을 보장받았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선임과 관련해 박홍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가 어떻게 제출됐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 지적 이후 2014년 2월 공모를 통해 임무혁 사무처장을 선임하는 등 채용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진흥회 사무처장은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간사로서 이사회 운영 전반과 문화방송 경영 관리감독 지원업무를 지휘하고 있으며, 방문진 직제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제반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 경영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과 관리 노하우 등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MBC 출신이 사무처장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사무처장을 선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인 MBC 출신 배제는 역차별 또는 비효율적인 채용 절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향후 사무처장 채용 시 개선방안을 이사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저희들이 박홍근 의원실에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방문진법 제11조 제2항에 사무처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방문진법이 개정되고 완전 공모한 사례는 전종건 처장 한 사람뿐이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특별 채용된 사례는 최창영 처장 한 사람이고, 나머지 이사 추천을 통한 일부 공모는 박근학 처장, 김상욱 처장, 임무혁 처장 등입니다. 저는 2014년 이사 추천 공모 때 프레젠테이션 하고 면접을 거쳐서 선임이 됐고, 2017년에는 이사

추천 표결을 통해 연임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 업무지시 관련입니다.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문서가 도착하지 않았지만 11월 7일 이완기 이사장께 조찬 미팅에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이, (PT 자료를 보면서) 제 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9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을 제가 이사장께 보고 드렸고, 그다음에 11월 9일에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일과 통지서 및 상대방 준비서면이 도착하면 이사회 결정에 따라 준비서면 제출, 소송기일 참석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월 9일에 보고 드렸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11월 8일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현재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것이 품의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이 새로 선임됐을 때 제일 처음에 갖다 드린 것이 방문진법, 정관, 그밖에 사원들의 업무분장입니다. 사원들의 업무분장을 아셔야 업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품의를 통해 업무분장이 조정됐는데 법률검토가 김용훈 차장에서 이의주 국장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의주 국장이 법률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송, 자문 등 법률 관련 업무는 이의주 국장에게 분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본회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법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사회나 사무처의 대응 조치 착수에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죄송하지만 이 설명을 왜 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징계 사유에 있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가처분 관련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가처분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휴가 간 사이에 공백 때문에 지시한 것과 관련된 것만 있는데...

○ 임무혁 사무처장

- 이것이 다 연결됩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것입니다.

○ 의장

- 김재성 차장이 휴가를 갔는데, 인수인계하라고 했는데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지요.

○ 최강욱 이사

- 이것이 소송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됐다고 생각해서서...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수인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김재성 차장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이 이의주 국장 업무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장

- 장현우 차장에게 인수인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 최강욱 이사

- 뭐라고 하는지 일단 들어보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신문기일 통지서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도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오전에 출근해서 최재영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당시에 특별한 것은 없었고 저희들이 기획안을 만들어 놓았던 신입 사장 공모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iMBC 온라인 방송을 통해 사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한다는 기획안을 인수인계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0일 오전에 이미 저는 무장해제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그러셨지요. “나오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오후에 사무실에서 장현우 차장이 약간 불만이 찬 목소리가 들려서 나가 봤더니 김재성 차장이 인수인계를 안 하고 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의주 국장이 담당인데 왜 인수인계를 안 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이 따로 불려서 아마 그것을 장현우 차장에게 업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무장해제를 당한 상태였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사무처장이었기 때문에, 가처분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 의장

- 가처분 내용과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왜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현우 차장에게 관련된 자료를 다 찾아서 넘겨줬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이 있는데 장현우 차장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왜 하지 않았느냐”

나”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담당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의장

- 지금 제가 가처분 문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1월 20일부터는 사장 공모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공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장

- 20일부터 김재성 차장이 휴가를 갔지요. 휴가 일주일 가는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장현우 차장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이사회를 계속 다뤘기 때문에 제일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하고 가라고 김재성 차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의장

- 그런데 이야기 하지 않았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했지요.

○ 의장

- 김재성 차장, 이야기 들었습니까?

○ 사무처 담당

-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 의장

- 들었습니까?

○ 사무처 담당

- 예.

○ 의장

- 그런데 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 사무처 담당

- 인수인계를 다 했습니다.
- 의장
 - 누구에게 했습니까?
- 사무처 담당
 - 원래 그 업무는 최창우 차장에게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 있었고….
- 의장
 - 최창우 차장에게요?
- 사무처 담당
 - 사무처장으로부터 장현우 차장이 맡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의장
 - 장현우 차장은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 사무처 담당
 - 장현우 차장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 의장
 - 알고 있었다고요?
- 사무처 담당
 - 저와 인사도 하고 헤어졌습니다.
- 의장
 - 그것은 나중에 장현우 차장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법률자문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있는데….
- 의장
 - 법률자문은 김용훈 차장이 하는 것으로 제가 동의했었습니다.
- 사무처 담당
 - 장현우 차장에게 업무 인수인계할 것은 다음 주에 있는 사장 접수 그것이 다였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 의장

- 장현우 차장에게 이사회 업무와 관련된 것을 인수인계하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수인계를 했는데, 법률자문은 이의주 국장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 의장

- 이의주 국장이 됐든 누가 됐든 법률자문은 저는 김용훈 차장이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의주 국장이 한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럼요. 김용훈 차장은 작년에 했었고,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 의장

- 그것은 그런데, 이사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장현우 차장에게 인수인계하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지요.

○ 의장

- 이야기했는데, 지금 김재성 차장은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야기를 다 하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지요. 당연히 인지하고 있지요.

○ 의장

- 장현우 차장은 못 들었다고 하고, 나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 했고, 제가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23일까지 나왔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직무대행이 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사회 업무 관련해서 하자가 생길까 봐 제가 23일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경한 업무태도 관련입니다. MBC 임원 대리 보고 관련입니다. 2016년 7월 21일 MBC 이사회 결의내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이 해외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C 이사회 결의내용은 백종문 본부장이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간단해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부 이사님께서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더라도 MBC 임원이 와서 보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사무처장이 과거에 대리 보고한 사례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8기, 제9기 때는 거의

사무처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강욱 이사님께서 임원이 보고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니까 다음에 보고 받고 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이 양해를 구했는데 양해가 안 되니까 다음에 백종문 본부장이 와서 보고토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강욱 이사님께서 “그리고 중간에 MBC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 그때 분명히 논의하셨지 않았습니까? ‘임원이 와서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매번 있을 때마다 와서 하는 것도 그러니 중간중간에 이메일로 내용을 보고받은 다음에 월에 한번 정도는 와서 하자’ 분명히 제가 기억합니다. 중간에 이메일로 온 내용도 보면 제목만 간단히 보내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명확하게 지적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요. 그냥 받아주고 ‘내가 간단하니까 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1일 담당 임원이 와서 직접 보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광고 홍보 관련입니다. 방문진 사업 홍보는 공모사업과 <시민의비평상> 2가지밖에 없습니다. 1년에 사용하는 홍보비 예산은 공모사업이 약 2,000만원, <시민의비평상> 약 1,500만원, 총 3,500만원입니다. 12개 매체를 선정할 경우에 약 30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책정되고, 과거에는 광고매체 선정 시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을 포함했으나 최근에는 예산 대비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인터넷 매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체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연말에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다 거치게 됩니다. 일반경비 집행에 대해서는 이사장 책임 하에 지출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무처에서 광고,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이전까지는 광고매체 선정이나 지출에 대해서 한 번도 이사회에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매체 선정하는 기준을 당시 이사장님 말씀대로 홍보효과와 예산 대비 효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방송문화진흥회와 MBC에 대해 건전한 비판이 아닌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보도와 악의적 왜곡보도를 지속하는 매체와 재벌 또는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매체는 제외 하라고 했고, 또한 약소 미디어를 배려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입니다. 공짜 골프 관련입니다. 접대와 향응 관련 주장인데, 울산MBC 윤길용 사장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윤길용 사장과는 골프를 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받은 적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015년 2월 6일부터 1박 2일 <글로벌 방송전문가 포럼>이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방문진 이사 6명 그리고 사무처장, 방송학자 4명, 7개 글로벌 방송사 대표 4명, 기타 5명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내려가서 울산MBC 간부들을 초청해서 점심·저녁을 같이 했고, 물론 방송문화진흥회 경비로 진행했습니다. 올라가는데 울산MBC에서 연양불고기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에 와서 보니까 고기를 받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인당 한 15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 이외 방문진 이사님들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에 내려가면 김영란법 이전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토산품은 일반적으로 다 줬고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0일 윤길용 사장이 와서 회사 기념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넥타이를 놓고 갔는데 명품 넥타이였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만 시가가 18~2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2가지는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홍삼선물세트를 받았다고 쓰셨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홍삼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문진 이사장이나 이사들과 윤길용 사장을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데, 향응을 지속적으로 받은 일도 없고 골프를 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성파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거기에 쓴

내용이 뭐냐 하면 MBC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사용도 부인을 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 10월 13일입니다. 노조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사무처로 왔습니다. 이사장님과 저에 대해 인터뷰 요청을 했고, 다 오라고 해서 요청하는 사이에 골프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2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사장님이 골프를 친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이사장님이 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부인한 것이 이사장님께서 처음에 노조에서 퇴근하면서 해서 나갈 때 “자회사 모 이사와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고 처음에 노조에서 물어봤을 때 이사장님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 것으로 아마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왔을 때 이사장님은 1시간 37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은 이사장님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저에 대해 물어본 것도 있습니다만 다 솔직하게 인터뷰를 했는데, 징계 사유에 보니까 임 처장은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다가 자료를 들이밀자 “MBC가 써도 무방하니 쓴 것이지, 싫다고 하는 것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시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거짓 기사입니다. 녹음파일을 틀어 주시지요. (녹음파일 청취) 자료를 저에게 내민 적도 없고 제가 거짓말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2013년 5월 3일입니다. 크리스탈밸리고, 주총이 종료되고 나서 총무부장과 담당 차장과 운동을 약속했습니다. 부킹은 MBC에서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동반 운동한 네 사람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가 다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5월 29일입니다. 크리스탈밸리인데, 주총이 종료되고 나서 동일한 내용이고 모든 비용은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노조에서도 누가 계산한 것인지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9일입니다. 크리스탈밸리이고, 전임 김종국 사장과 MBC 사우회 원로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고 모든 비용은 제 개인 돈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윤길용 사장에게 제가 골프 접대를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제 개인 재산을 다 방송문화진흥회에 기부하겠습니다.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고, 많은 부분들을 소명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소명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질문 답변하셔야지요.

○ 유기철 이사

- 제가 두어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간사

- 아까 내규 일자 말씀하셔서, 9월 11일에 내규가 제정됐고 9월 14일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날 결과보고가 이루어졌고 9월 25일에 이사장 결재로 10월 1일에 인사발령이 있었습

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개최와 내규 제정기간은 사흘 정도, 11일과 14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유기철 이사

- 징계 사유서를 쭉 보면 전부 잘못된 것이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는 식인데, 극히 일부분만 시인했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렇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유기철 이사

- 그렇게 다 잘했다면 고영주 이사장께서 왜 불신임을 당했을까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불신임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 유기철 이사

- 그렇지만 보좌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쭙보는 것은 고영주 이사장께서 방송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모르고 일도 몰랐다면 중간에서 링크 역할을 사무처장이 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영주 이사장이 불신임 당하고 저렇게 된 데에는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이인철 이사

- 본인이 쫓아내놓고...

○ 유기철 이사

- 대리인 하지 마십시오. 변호인 하지 마십시오.

○ 이인철 이사

- 우스워서 그렇습니다, 하도 우스워서.

○ 유기철 이사

- 할 이야기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김경환 이사

-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아까 모두에 자금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지난 30년간 한 번도 이사회에서 의결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없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그리고 자금운용은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들의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아닙니다.

○ 김경환 이사

-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금운용계획이 예산안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운용이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올 한 해에 자금을 얼마나 수입을 잡아서 얼마나 지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자금운용계획이 포함됐다고 이사님들께서 생각하셔서 30년 동안 결의를 없었던 것이지요.

○ 김경환 이사

-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회 결의사항인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저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시면 이사님들도 똑같은….

○ 김경환 이사

- 그렇지요. 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신 것으로….

○ 임무혁 사무처장

- 방문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그러니까 이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방문진 홍보와 관련해서 '미디어워치', '뉴데일리', '조감제닷컴'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 그다음에 온라인 홍보효과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임무혁 처장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이사장님의 전적인 결정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요. 방문진 사무처장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모든 사항을 다 알고 계시고, 아주 간단한 것에 대해서도 다 보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저는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3개 업체만 광고홍보비를 줬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이지 않고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권혁철 이사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환 이사

- 저는 이사님들이 아니라 임무혁 처장에게 여쭙보는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적은 있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이사님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는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냥….

○ 의장

- 무엇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누가 결정하는지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의장

- 무슨 결정을 어떻게 누가….

○ 임무혁 사무처장

- 매체에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의장

-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다 알고 계시겠지요.

○ 최강욱 이사

- 본인이 주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 유기철 이사

- 다 알고 계신데, 여기에 나온 핵심은 뭐냐 하면 그렇게 건강부회해서 또 부화뇌동해서 이사장편을 들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부인 안 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소신이나, 그것이 아니고 그런 발언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완기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아주 사소한 것 500만원 이상 품의가 되는 것은 이사장님께 결재를 다 받고 그 이하에 대해서도 다 보고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완기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을 하십니다만 이사장님이 결정해서 내리는 지시에 대해서는 사무처나 사무처 직원들이 거부하기가 어렵습니다.

○ 유기철 이사

-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미디어오늘 등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매체”라고 이사회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유기철 이사

- 됐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품의 난 그대로입니다. 품의 난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유기철 이사

-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없으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서로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사무처장의 신분이 법과 정관이나 여러 규정상 애매한 측면이 있어서 과거에 직원으로 취급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사회에 결의사항, 동의사항으로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소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동의가 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동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여기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단 하나 사무처장이 직원이 아니다, 근로자입니다. 왜냐하면 인사규정에 사무처장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나는 직원이라고 생각한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무처장으로서 불편부당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자부하시겠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불편부당의 측면, 진실의 측면, 못한 부분 있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다음에 또 하나는 큰 틀에서 이사장 지시 내지는 의중과 이사회 구성원들의 결의사항 내지 규정이 배치되면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셨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회 결의사항이 맞겠지요.

○ 최강욱 이사

-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리고 지금 이사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또 과거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현 이사회 결의사항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이사회 결의가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어느 것이 맞다고 볼 수 없겠지요.

○ 최강욱 이사

- 그것은 맞다고 볼 수 없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규정을 봐야겠지요.

○ 최강욱 이사

-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라면 현재 이사회 결의와 과거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최근 것이 맞겠지만, 규정이 현재의 결정이라고 해도 반한다면 과거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요.

○ 최강욱 이사

- 그 전제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일반론을 부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현재 이사회 결의와 과거 이사회 결의 중 어떤 것이 존중되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 임무혁 사무처장

- 최근에 한 것이 존중되어야겠지요.

○ 최강욱 이사

- 당연히 현재 결의가 맞는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어려운 이야기도 아닌데, 그다음에 고성을 지르고 이사회 이사들에게 항의하고 따진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내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고성이라기보다는 격앙된 부분은 있었겠지요.

○ 최강욱 이사

- 있었을 것 같다? 고맙습니다. 하나씩 여쭙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쪽 징계 사유로 들었던 것 중에서 방문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현재 방문진이 자금운용 소위를 구성해서 자금운용계획을 만들고 또 관련 지침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을 제가 다 한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강욱 이사

- 맞다고 생각해서 하셨겠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단지 자금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자금운용계획과 이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자금운용계획이 다른 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금운용계획은 전반적인 자금을 수입을 어떻게 해서 운용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월자금을 어떻게 넘기느냐 정도로 생각을 했고, 이사님들은 어떤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금융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최강욱 이사

-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처장으로 계실 때 그런 관련 지침이나 소위원회를 내가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금운용이 되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더 낫기는 하겠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처장님은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금운용계획을 은폐했다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소명하시는 것이고, 그렇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리고 30년 동안 쪽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꼼꼼히 따지지 않고 나에게 이것을 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하셨던 이야기

이고, 그렇게 포함해서 하셨던 것과 본인 스스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것을 위해 지침과 위원회를 만든 것과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리고 있는 것이 발전된 형태라는 것도 방금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앞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이사가 개진했고 그것에 의해 결국 자금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보고 드렸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계속 회의에서 주장하셨고 오늘도 그 주장의 맥락에서 일관해서 변명하신 부분이 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필요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 단지 차기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 최강욱 이사

-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때는 그것을 당장 해치우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할 때 본인의 의견은 지금 과거에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런 기본 맥락에서 계속 일치한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에 이사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예산 자금 계획 및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것을 부인하면 30년간 이사님들이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자금운용계획….

○ 최강욱 이사

- 자꾸 쉬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쉬어서 말씀하시는데, 현행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과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자고 의견이 나온 것이고….

○ 임무혁 사무처장

- 잘 바뀐 것 같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당시에 거기서 당장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지금까지 오해 살만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예산에 포괄해서 다 보고하기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이나 정관에 볼 때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락시켜서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의혹 없이 잘해 오고 있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절차적인 문제에서 지적 받을 우려가 있고 빌미를 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당장 현장에서 '30년 동안 해 오지 않았고 규정상으로 다 이렇게 예산을 포함해서 보고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북한주민 방송사업 관련해서 이것 역시 회의 안건 등등 여러 가지 제기가 됐는데, 그때 구두로 제안한 안건은 안건이나 아니냐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시면서도 규정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구두로 제안한 안건만 있으면 저희가 기록하고 안건을 통제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당시 회의에서 저와 살짝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제가 "처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제가 제9기 때부터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논의를 해서 다수의 의견으로 제출되면 당연히 안건이 되는 것이고 구두로 제안한 안건도 안건으로

성립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당시에 감사로 있었던 고영주 전 이사장께서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때 통과시킨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잘 기억 못 합니다.

○ 최강욱 이사

- 기억 못 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의 역할과 사무처의 역할에 대해 과거 처장님들과 임무혁 처장님이 혼동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무처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곳이지, 이사회 결의를 넘어서는 의견을 관행을 내세워서 사무처가 바꾸려고 한다거나 사무처의 편의를 위해 이사회 결의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거나 이사회에서 이야기되는 내용의 당부를 사무처가 따져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의 문제나 자금운용의 문제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나, 심지어 제출된 안전을 과거에 다수 이사 분들이 표결해서 안전이 아니다라고 자기들끼리 표결해서 각하시키는 장면도 보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봤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런 일은 과거 30년 동안 있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모르겠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것 확인도 해 보지 않았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과거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렇게 본인과 관련되어서 소수 이사가 제기한 부분은 “30년 동안 안 해 오던 것을 왜 지금 하라는 것이냐”라고 반박하시고 다수 이사가 과거에 관련이 되어 있으면 확인도 안 해 보고 “과거 일을 왜 확인해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부당의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본인도 “100%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인정하신 부분이 아마 그런 지점에서 생길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것은 제가 선회하자면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사장의 의중이나 지시를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과 규정에 비추어 사무처장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과 규정에 비추어 사무처장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글썄요.

○ 최강욱 이사

-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가능하면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위 관련해서도 “단순히 착각이었다. 내가 그때도 적어놓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라고까지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그때 언쟁이 됐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나중에는 잘못된 것으로 확인이 됐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지요.

○ 최강욱 이사

- 진짜로 모르셨습니까? 누가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 속기록을 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사회에 참석하고 있던 이사회 담당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사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속기록을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렸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러니까 너 혼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이야기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느냐, 이런 취지의 항변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여러 명이 혼동하고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여러 명이 혼동하면 사무처장이 혼동하는 것도 당연하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사과를 드렸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고….

○ 임무혁 사무처장

- 착오가 있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내용 전달을 내가 오해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사들을 꼭 끌고 들어갑니다, 이사장, 이사를 변명꺼리로.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장님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알겠습니다. 거짓말로 이사를 음해했다고 <2>의 <가>항으로 되어 있어서, 최민희 의원과 통화했다는 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전화를 하고 있더라. 그러더니 회의에 들어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내가 회의 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때 남이 전화한 것을 엿듣고서 그 전화를 통해 나오는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최민희 의원 이더라?

○ 임무혁 사무처장

- 실명이 나왔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 최민희 의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 임무혁 사무처장

-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이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 이야기는 목소리나 무엇으로 볼 때 당연히 최민희 의원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휴정했을 때 최민희 의원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최민희 의원이 전화하는 것을 국회에서 들은 것이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국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이사회 석상에서 녹취록 사건 관련한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처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야당 의원과 연락을 했다”라는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였다고 지금도 확신하십니까? 백중문 녹취록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명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 당시에 그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 최강욱 이사

- 불편부당의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래서 사과를 했지요.

○ 최강욱 이사

- 그것도 의심이 갈 수 있는 것이 있겠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사과를 드렸지요.

○ 의장

- 잠깐만요. 사실관계가 여기에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백종문 녹취록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국정감사 때 소송비용 관련된 문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맞습니다. 그 진입입니다.

○ 의장

- 알고 계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의장

-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임무혁 처장의 발언한 태도가 굉장히 정파적이고, 그다음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거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소수 이사들과 통화한 것처럼 소수 이사들을 향해서 “최민희 의원과 통화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벌써 임무혁 처장의 일반적인 업무태도의 문제가 상당히 큰 것이지요. 심각한 문제지요.

○ 최강욱 이사

-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셨으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정을 했고, 그 당시 전체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보면 준비할 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밤 12시까지 한 두어 달 밤샘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질의하는 자료요청 오는 것을 보면 방송문화진흥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 의장

- 잠깐만요. 국정감사 때 사무처장이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비용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감 가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아시다시피 최민희 의원이 이 자료를 얻으려고 상당히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금액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이 사무처장이 해야 할 발언이 아니지요. 이런 발언들이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이 해야 할 발언도 아니고 상당히 정치적 발언이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제가 이렇게 여쭙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의원들이 그런 자료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감 지적사항 관련해서도 그것은 야당 주장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처장님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될 때 그것은 여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집권당이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것은 대통령 지시사항 아니냐고 회의에서 밝히시고 따지신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런 적 없지요.

○ 최강욱 이사

- 없지요? 야당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왜냐 하면 국감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당시 여당에서는 자료요청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당은 왜 자료요청을 별로 하지 않고 야당은 왜 많이 했을까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최강욱 이사

- 여당 입장에서는 당시 MBC가 좋았지요. 지금 본인들이 자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수 뇌부를 지배하고 있었다”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웃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지배하는 데 통로가 됐던 분들.

○ 이인철 이사

-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데, 관련 되는 이야기만 하세요.

○ 최강욱 이사

- 이분들이 굉장히 처장님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고 해서 정해진 절차니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원배 이사님 따님이 응모해서 됐다는 부분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몰랐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5월에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착오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난센스지요. 9월에 알게 됐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미디어오늘'을 보고 알았지요.

○ 최강욱 이사

- 기사가 나서?

○ 임무혁 사무처장

-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확인하느라고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김도영 기자였던 것 같은데….

○ 최강욱 이사

- 알겠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당시에 “소위원회가 누구냐?” 소위원회 가르쳐 주고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해서 가르쳐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최강욱 이사

- 알겠습니다.

○ 유기철 이사

- 그래서 추후 조치를 취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추후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경영진에게 카톡방에 초대해서 본부노조의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지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김장겸, 백종문, 최기화 그다음에 임 처장님 네 분이 들어 있는 카톡방입니까? 임 처장님이 개설한 카톡방….

○ 임무혁 사무처장

- 카톡방을 특별히 만든 것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보내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기가 힘들어서 카톡방을 만들어서 보내고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때 한번 보내고 끝난 것이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일체 대화가 없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것은 사무처장의 업무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당연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엠바고라는 것 자체가, 엠바고가 요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엠바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엠바고 문제가 아니지요. 이 내용 자체가 경영진에게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최강욱 이사
-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보 제공 차원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사들에게는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님들께는 안 보냈지요.
- 최강욱 이사
- 이사들은 왜 필요가 없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님들 다 알고 계신데, 무엇을 보냅니까?
- 최강욱 이사
- 이사들은 다 알지만 경영진들은 모를 것 같아서….
- 임무혁 사무처장
- 왜냐 하면 23일에 하는 자료 자체가 방문진에서 나갔는데, 그것을 모를 수 없지요.
- 최강욱 이사
- 이사들은 다 아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럼요. 그것이 방문진에서 나간 자료인데요.
- 최강욱 이사
- 그 자료가 있는 것과 보도가 되는 것과 조금 다른 일인 것 같은데….
- 임무혁 사무처장
- 다 알고 계시는 일인데….

○ 최강욱 이사

- 이 사람들은 모릅니까? 거기에 와서 직접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응모해서 면접해서 속기돼서 사장으로 뽑힌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은 내용을 다 몰라서 보내주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보내준 것이고 이사들은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안 보냈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혹시 모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보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 최강욱 이사

- 이사들은 다 알 것이라는 확신을 했고, MBC 임원들은 혹시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보냈던 것이다?

○ 임무혁 사무처장

- 확신이 아니라 이사님들은 다 알고 계셨지요. 왜냐하면 그 자료 자체가 여기에서 나간 것이니까요.

○ 최강욱 이사

- 자료 자체가 나간 것을 자꾸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고 말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모를까 봐 걱정돼서 보내준 것이고 혹시라도 모를 수 있으니까, 이사들은 임무혁 처장님께 카톡을 통해 무엇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문자메시지로 보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왜요? 제가 처음에 많이 보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문자로 보내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카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톡방 개설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사들에게 보낼 때도 카톡방 개설해서 한 번에 보내시면 편의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편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카톡방까지 만들어서 보내시고, 또 이사들에게는 필요가 없고 이 사람들은 모를까 봐 보냈다는 것이 누가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카톡방에서 무엇을 논의했다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혀 없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것은 알겠습니다. 논의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료 제공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자료 제공이야 방문진에서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 최강욱 이사

- 그다음에 속기록 관련해서 유의선 이사에게 제공한 부분이 과거 이사회에서 분명히 결의된 사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정합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그것은 이사장 결재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책임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 당시 견지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속기록을 만들어야 하고 모든 속기록은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사장님께 종용 아닌 종용을 했고 이사장님도 허락을 하셨고, 그래서 딱 두 번 나간 것이 그때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전에는 속기록을 보여 달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유의선 이사만 유독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속기록에 관한 내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이사장께 말씀드린 것이고...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 최강욱 이사

- 그것은 아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당시 이완기 이사님께서는 수시로 와서 보셨고...

○ 최강욱 이사

- 처장님, 사람이 물론 방어를 하시려면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데 맥락을 자르고 그 한 부분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하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인사규정만으로 충분한 것이다, 채용에 해당된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내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서 내규를 만들어서 3일 후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 것이라고 소명하셨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맞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회의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규정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인사위원회 결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관계가 없다? 인사규정 상에는 분명히...

○ 임무혁 사무처장

-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는데 단지 인사위원회 자료는 참고일 뿐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사무처장 선임이나 해임도 이사장 권한인데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러면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이네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동의는 거쳐야겠지요.
- 최강욱 이사
 - 그것은 동의가 필요하고 인사위원회 거치는 것은 필요가 없고, 이사회 이사들 권한이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여기에서 동의를 구한다는 이야기가 없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사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것을 왜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겠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냥 의견만 구하는 것이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인사 문제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공정성의 핵심이지요. 그다음에 투명성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인사위원회가 저희가 구성한 다른 소위와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구성 자체에서부터 인사위원회는 다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장도 정해져 있고, 인사위원회 구성도 인사위원들 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만큼의 절차상의 중요성이고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저는 법률가로서 이해하는데, 처장님은 견해가 다르시군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을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제가 여쭙본 질문은 인사위원회 결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 품의를 올릴 때 어떻게 올렸느냐 하면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이사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당시에 품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 최강욱 이사

- 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지금 처장님의 견해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것은 알겠고….

○ 임무혁 사무처장

-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 최강욱 이사

- 결의는 원래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일반론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결의는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겠지요.

○ 최강욱 이사

- 다수결을 하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 이야기해 보고 다수의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결의가 끝나는 것이라고 본인은 이해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의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의결은 소수의견도 있고 다수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이사장님께서 결정하실 때는….

○ 최강욱 이사

- 소수의견, 다수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것과 결의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여쭙보겠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몫이지요. 다수의견이 있는데 결정을 반대할 수는 물론 있겠지요.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은 누가 합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사위원회에서의 결정은 인사위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뿐이지요.
- **최강욱 이사**
 -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의 역할은 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진행하는 것과 회의의 결론을 지어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도 포함하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러니까 여기서도 솔하게 회의에 들어오셔서, 다 논의하고 나서 표결하는 경우도 있고 다수 의견이 모아졌으니 의견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동의를 구해서 이 사장님이 망치를 두드리는데 다 보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회는 그런 절차는 필요가 없다, 그냥 이야기가 되어서 내가 보니까 두 사람 이사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인사위원회가 의결된 것이고 사실은 필요도 없는 것인데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찬성이 두 분 계셨고, 보류가 한 분 계셨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지, ‘그것이 다수결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갑시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유기철 이사**
 - 그 이야기를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그 사실관계를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 결의를 거쳤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은 사실이지요.

○ 최강욱 이사

- 결의를 거쳤느냐고 물어봅니다. 개회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한국말을 하시면서 왜 자꾸 그것을 피하시지요? 본인이 공개를 요청해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궁색하게 답변하십니까? 결의를 거쳤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결의를 거쳐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그러니까 제가 결의를 거쳤냐고 물어봤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결의는 소위원장이 나가셨기 때문에 결의는 안 됐지요.

○ 최강욱 이사

- 예, 결의는 안 됐습니다. 이사회 속기록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처장님이 직무에서 배제되기 전에 “회의록을 고쳐야 되겠다” 비실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속기록을 공개하고 회의록은 약식으로 앞에 결론 적시해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과거의 회의록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실명을 찾아서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에게 답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회에서 결정만 내려주면 저희는 늘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요.

○ 최강욱 이사

- 그것 외에 또 말씀하신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겠지요.

○ 최강욱 이사

- 물론 다 기억을 못 하시지요. 제가 그래서 “기존 속기록들이 다 있으니 거기서 발언자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회의록 있는 것에 이름만 더 부기하면 되니까 찾아서 하자”라고 말한 것 생각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납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글썬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 **최강욱 이사**
 - “속기록은 3개월만 보존합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본인도 이것 준비하면서 속기록 요청해서 받아보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몇 개만 받아봤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지금 저희가 속기록 관련해서 쪽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체크하느라고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2016년 11월 속기록도 여기에 있습니다. 2017년 1월 속기록도 있고, 이것이 3개월 전 것입니까, 3개월 안에 있는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속기록 보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사회 담당 실무자가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규정에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것이 규정에 있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럼요. 이사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규정에 있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규정이 아니고 이사님들이 결정하셨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임무혁 사무처장

- 결정하셨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규정은 아니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기록이 3개월 지나면 다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 들어와서 속기록이 과거 것이 다 있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처음 알았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저와 이야기할 때는 검찰 압수수색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속기록은 3개월만 보존합니다”라고 답변하셨을 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 전이지요. 검찰수사 들어온 것이 그 후지요.

○ 최강욱 이사

- 압수수색 전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압수수색 들어오고 나서 처장님 거취 문제가 논의되어서 직무배제가 됐습니까, 압수수색 전에 되셨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압수수색 후에 됐지요.

○ 최강욱 이사

- 압수수색이 더 먼저 있었어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 후에 있는 회의에서 제가 그것을 여쭙보니까 “속기록은 3개월만 보존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제가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서 “그러면 없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지요” 하고, 이사장님이 “속기록 다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 안 나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당시 이사회 담당자가 업무를 잘못된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알겠습니다. 분명히 뱉어 내신 말이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왜냐하면 이사회 결정사항이 3개월 지나면 폐기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안 되지요.

○ 최강욱 이사

- 알겠는데 그것은 별개로 저희가 처리할 문제이고, 임무혁 사무처장께서는 이사회 속기록이 담당자의 실수건 아니건 누구의 지시건 간에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회의록 작성방법의 개편을 논의하는 이사회석상에서 이사 최강욱이가 물어볼 때 속기록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몰랐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몰랐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것을 인지한 시점이 압수수색 때 내가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압수수색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몰랐다고 말씀하신 것
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몰랐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날짜로 확인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착각 같으면 정정하십시오.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제가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이진순 이사

- 제가 다른 사안들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은 제가 보컬이사로 선임되고 난 이
후에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들었던 이야기지요?

○ 최강욱 이사

- 이분들 오시기 전에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오시고 나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 이진순 이사

- 회의록을 3개월여치만 보관된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와서 들었던 이야기이고, 검찰 압수수색은
그 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저도 3개월 지나면 당연히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김재성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다 공개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기록 보존되고 있는 것을 압수수색 때 내가 처음 알았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나중에 안 일입니다만 전임 이사회 담당자가 김재성 차장에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속기록 자체를 다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속기록을 다 폐기했지요?

○ 사무처 담당

- 예.

○ 임무혁 사무처장

- 다 폐기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지나면 폐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한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전이나 후냐를 이야기했는데 압수수색 전에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날짜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최강욱 이사

- 유의선 이사가 과거에 속기록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셨을 때, 어느 정도의 분량을 요구하셨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몇 건이나 되지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 사무처 담당

- 그때 해외연구 갔다 오신 것 보고서 쓰실 때 참고하기 위해 기존 제10기 이사회 출범 이후에 다 달라고 했고, 저희가 3개월 보관 원칙을 말씀드리고 3개월간 그 보관원칙에 따라 남아 있는 속기록만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아마 2016년 10월 정도부터 2017년 2월 정도까지 보내드렸습니다.

○ 최강욱 이사

- 3개월분만, 원래 다 있지만 원칙상 3개월분만 보내드려야 되니까….
- 사무처 담당
 - 예, 그때 남아 있는 속기록을 드렸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남아 있는 것을 드렸지요? 유의선 이사님은 다 달라고 했었고, 보낸 것은 3개월만 보냈고….
- 사무처 담당
 - 예,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러면 보낼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의선 이사님이 다 달라고 하시는데 다 드릴 수는 없고 지침상 3개월치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지요?
- 사무처 담당
 - 사무처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러면 3개월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것을 그때 알고 계신 것이네요?
- 사무처 담당
 -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저는 알 수 없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자꾸 이렇게 있었던 일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공로금 문제를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것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MBC 총무팀이겠지요. 주총 준비하고 하는 데는….
- 임무혁 사무처장
 - 주총 준비는 총무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주관하는 데는 방문진과 정수장학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주총 안건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할 일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는 일이 생겨서 처장님도 그때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고 당황하셨고 이사장님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업무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잘한 행동은 아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왜냐하면 주총이 이사회 시간과 며칠간의 차이만 있다면 이것은 밝혀지는 내용인데, 이사회 하고 당일 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 최강욱 이사

-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 임무혁 사무처장

- 다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공개하는 것이 맞겠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최강욱 이사

-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논의할 때 다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하느냐, 유관기관과 맞춰서 하자” 라는 의견을 개진하신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러면 원래 소신과 안 맞는 이야기네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럴 수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사회 보고사항과 관련해서도 과거 사항을 확인해 보면 사무처장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니까 뭔가...

○ 임무혁 사무처장

- 사무처장이 한다고 안 했고...

○ 최강욱 이사

- 했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과거한 적이 있으니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여쭙 봤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러지는 않았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양해를 구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보고하신다고 해서 제가 처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 임무혁 사무처장

- 문서 그대로입니다. “MBC 이사회 결의내용은 백종문 본부장이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간단해서 제가 보고를 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양해하지 않았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양해가 안 됐지요.

○ 최강욱 이사

- 그것은 과거부터 결의해서 이사가 와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외 출장이라고 해서 처장님이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논의가 돼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래서 2016년 9월 1일에 백종문 본부장이...

○ 최강욱 이사

- 어쨌거나 처장님은 항상 본인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이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처음에 원래 그렇게 이야기했었으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제8기, 제9기 때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왜 지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다음에 뭐가 더 이야기가 되면 "규정대로 한번 해 볼까요?" 이런 것 생각이 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규정대로가 아니라 "절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리고 "간사는 왜 발언을 하면 안 됩니까?" 끼어들어서 자꾸 의견을 제시하지 말라고 하니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생각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간사로서는 보조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강욱 이사

- 불편부당한 발언을 나는 보조발언을 했을 뿐이다, 불편부당하게 오해 받을 여지가 없이 적절한 발언만 했다? 필요한 부분에서 팩트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 임무혁 사무처장

- 이사회에서 팩트를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전화한 팩트를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한 것이다? 이사회에 알려 줘야 되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세의 기자 건만 하더라도 자꾸 3건이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2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팩트로 이야기하셨는지 봅시다. 유의선 이사님이 처음에 사퇴를 고민하시는 단계에서 초반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에 안 오신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왔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제가 여쭙 봤지요. 그래서 처장이 뭐

라고 하셨느냐 하면 “대학원장으로 취임해서 행사가 있어서 못 왔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제가 “대학원장으로 언제 취임하셨다는 말이나” 이것이 나중에 나온 이야기였고, 저는 처장님 이야기를 취임식 때문에 못 왔다는 말로 들었는데….

○ 임무혁 사무처장

- 아닙니다. 취임식이 아니고 대학원장 업무 때문에 5시인가 그때 회의가 있다고….

○ 최강욱 이사

- 속기록에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장 업무 때문에 그렇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처장님은 원래 대학원장으로 취임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학원장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취임식을 몇 시에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을 통해 확인되면 그때 오간 이야기들은 확인이 됩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취임식이 몇 시인지는 제가 모르지요.

○ 최강욱 이사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조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본인이 또 사장의 위치에도 계셨고, 사무처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해야 하는 것 맞고 이사와 이사회를 존중하고 그 결의된 사항을 집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사장의 지휘·감독에 응해서 사무처를 통솔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 재임 시에 있었던 일들이 어느 정도 개편된 부분들도 있고 본인이 관여해서 개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정작 그 안건이 논의됐을 때 즉시즉시 고쳐서 집행한 것은 몇 번 있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서 정정하신 적은 몇 번 있지만 업무 프로세스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잘못이 인정되고 고쳐진 적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잘못된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일단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일을 신속하게 하려고 애를 썼고,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 입장에 서서 일을 하려고 애를 썼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있어서는 너무나 그 당시에 정파적으로 토론시간도 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 고충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은 과거에 계셨던 처장님들도 못지 않았지요. 제가 임무혁 처장님 진심으로 업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또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직원들 배려해서 임무를 잘하려고 하셨던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처장님과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중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처장님과 제가 이렇게 얼굴 붉힐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무리 지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거에 뺏던 처장님들, 과거에 진행됐던 이사회를 제가 외람되지만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 보였던 처장님들의 모습과 임무혁 처장님의 모습이 지나치게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불편부당의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적극적이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오판을 한 것 입니까, 처장님이 어떤 다른 것들을 의식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방송문화진흥회는 물론 한국 방송계의 문화 창달을 위해 존재했지만 또 문화방송의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문화방송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사님들끼리 모여서 제9기, 제10기를 제가 지내오면서 보면 방송문화진흥회가 MBC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리당락적으로 너무 부딪히니까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항상 야당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지는 않았지요.

○ 최강욱 이사

-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끼어 드신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야당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이야기하신 적은 있었고….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지적사항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마지막인데 골프장 건은 다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셨다고 했는데, 세 번 다 개인카드로 하신 것입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당연히 개인 카드지요.

○ 최강욱 이사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여기 징계사유를 쪽 봤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금운용계획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사가 지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그것이 1월 9일 이사회입니다. 원하시면 하겠다고 해서 1월 9일에 내용이 나와서 2월 2일 이사회에 자금운용계획을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 의장

- 그 부분이 지금까지 자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쪽 논란이 있었지요? 논란이 있었고...

○ 임무혁 사무처장

- 논란은 없었습니다. 30여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의장

- 그날 이사회 때 논란이 있었지요. 그날 이사회 때 논란이 있어서 다수 이사들은 김광동 이사님 포함해서 김원배 이사님도 말씀하셨고, 전부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포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것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이사회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무처장도 계속 거기에 동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회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이사님들도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 의장

- 그리고 북한주민 방송지원 사업 관련해서 9월 22일 이사회에서 응모단체의 계획서나 또는 사업 검증방법들에 대한 자료를 상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이사들에게 메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의장

- 이사장님이 메일로 보내라고 했고 김광동 이사도 “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전혀 메일로 보내 준 적이 없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은 사무처장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처장과 이사회 담당자와 업무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 의장
 - 그러면 실무자에게 그것을 메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모든 자료는 제가 지시를 안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다 가지 않습니까?
- 의장
 -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2016년 12월 21일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환기가 됐습니다. 지적이 돼서 “왜 안 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사무처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선정됐을 때 과정을 다 설명 드렸다”라고 또 답변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설명 드렸었지요.
- 의장
 - 그러니까 설명하고 나서 그 메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이미 설명을 다 드려서, 그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해서 메일로 보내주기로 결의가 됐는데 그 뒤에 안 보낸 것이지요. 그랬는데 안 보낸 것은 실무자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 임무혁 사무처장
 - 그것보다는….
- 의장
 -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내지 않은 것은 사무처장의 책임보다는 실무자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니깐 ‘선정됐을 때 선정과정을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내줄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안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세월호 특조 동행명령 사건에 관련해서….
- 임무혁 사무처장
 - 북한방송 관련해서 답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 답변해 보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북한방송 관련해서는 이완기 이사장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다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2가지 문제점을 그때 지적하셨습니다. “영수증이 없다”고 하셨고, 또 하나 “송출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송출계약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가지에 대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영수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의장

- 그것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그 이후이지만….

○ 의장

- 지금 이후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 당시에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사회에서 자료를 요청하기로 됐고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리기로 했으면 사무처에서는 보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이 사무처장의 책임이 아니고 실무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만약에 안 갔다면 책임은 물론 있겠지요.

○ 의장

-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권혁철 이사

- 의장님, 잠깐 속기록에….

○ 의장

- 권혁철 이사님, 말씀 끝나고 해 주십시오.

○ 권혁철 이사

- 예.

○ 의장

- 그 이후에 보내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 왜 보내지 않았느냐, 보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무처장이 그것까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 사무처장의 태도는 보내지 않아도 좋다는 태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사건 관련해서 “구두로 내용 보고하면 안전이 될 수 없다” 이런 식

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그것이 한번 그런 것이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 이야기하신 것 기억 나시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지금도 제 소신에는 구두 안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문서로 올라와야지, 누가 안전을 올렸으며….

○ 의장

- 그 당시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7조에 안전 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간사는 의안을 이사장 결재를 받아서 이사회에 상정하고 대장에 기록하고 부의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예.

○ 의장

- 그때 당시 최강욱 이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으로 해야 합니다”라고 했고 이사장도 동의했고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했으니까 열흘 뒤에는 자동 안전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다 기억나시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무처에서 안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강욱 이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사무처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안 만들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사무처에서 안전을 만들 수 없지요. 내용을 모르는데 안전을 저희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 의장

- 구두로 이야기하면 그 내용을 기록해서 안전으로 만들어야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그렇지 않습니다.

○ 의장

- 그것을 왜 못 만듭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안전에는….

○ 의장

- 지금 사무처에서 내놓는 안전이, 예를 들어 방문진 이사회 안전이라는 것이 전부 이사들이 이야기한 안전입니까? 사무처에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 임무혁 사무처장

- 정기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자동안건이 되지만 그밖에 특별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되지 않습니까?

○ 의장

- 서명이 아니고 그 당시 분명히 최강욱 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안건이 되어야 하고 열흘 후에는 자동으로 안건으로 됩니다”라고 했으면 사무처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구술해서 안건으로 만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한 것이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지금도 제 소신은 안건은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의장

-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월호 특조위 안건과 관련해서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MBC 사장과 간부들 입장,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요청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당시 고영주 이사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무엇 무엇을 말했는지 받아적었느냐?”라고 물어봤고, 임무혁 처장은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7월 4일에는 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자료가 준비 안 됐었지요. 그리고 나중에 임무혁 처장은 잊어버렸다고 하고….

○ 임무혁 사무처장

- 세월호 특조위에 문서를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의장

- 자료를 준비 안 했지요.

○ 임무혁 사무처장

- 제가 세월호 특조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날 도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 아니지요.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 임무혁 사무처장

- 날짜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 의장

- 나는 못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임 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특조위에

자료를 요구하자선 이야기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사장님께서 직접 논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계속 부인하니,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부분은 그것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 좋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고….

○ 임무혁 사무처장

- 업무를 제가 4년 동안 하다 보면 단순한 실수나 아니면 인지를 잘 못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 의장

- 좋습니다. 임 처장이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사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사 있음) 없으시면 퇴장해도 좋습니다.

(임무혁 사무처장 퇴장)

○ 최강욱 이사

- 고생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지요.

○ 의장

- 식사하고 할까요? (“예” 하는 이사 있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 40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무혁 처장 소명이 있었습니다. 임무혁 처장 징계 안건 관련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철 이사

-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소명 들어보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절차를 통해 확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임 사유 이야기하고 반대

사유 주장 듣고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사실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의장

- 사실관계 확인은 지금 나온 이야기로는 임무혁 처장이 이야기한 상당 부분들이 본인의 입장과 의견이었고, 사실관계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일부 배치되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어차피 이것은 이사장님이 결정해야 해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정하시든 삭제하시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인철 이사

- 물론 주장을 들어봤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지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중대한 사실 확인할 부분, 아까 골프 쳤느니 마니 이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것이 굳이 해임사유로 들어간다면 확인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하지요. 왜냐 하면 이것을 전부 다 해임 사유로 올려놓은 상황에서는 사실 확인이 있긴 있어야지요. 그래야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듣고 해임 사유에 대해 살펴봤다는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쪽 사유와 반대 주장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절차를 제대로 밟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유기철 이사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공판을 다시 열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골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쟁점이 되거나 배치되는 부분을 빼고라도 저는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2시간 이상 소명을 하고 가셨는데, 눈곱만큼의 책임의식도 없고 방문진 고위직으로서 양심마저 저버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 안에 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 그 해답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했던 것을 천천히 제가 분석하니까 일단 증거가 약간 제기하는 쪽에서 미비할 것으로 보이면 오리발 내밀고, 그다음에 코너에 몰리면 비틀어서 왜곡하고, 곤란하게 되면 빼먹고 넘어가고, 기타 맞불 놓기, 물 타기, 치고 빠지기, 막판에는 최 이사께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결의 관련해서 꼬치꼬치 추궁하니까 자꾸 판청만 부려서 시간 잡아먹고, 파렴치의 전형이지요. 본인은 부인하겠지만 임무혁 사무처장의 저런 처신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방문진은 '극우세력의 놀이터'라고 해서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MBC 몰락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겸 사장도 해임이 됐고, 결국 고영주 이사장도 불신임이 됐고 조금 전에 이사직도 잃게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결과들이 현실의 문제로 나와 있는데 실무 책임을 졌던 사무처

장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잘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 '이사장 지시에 따라 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연봉 1억 몇 천씩 주고 사무처장을 고용합니까? 방문진법에 사무처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자리 규정까지 해 놓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메신저 보이나 메신저 걸을 고용할 것 같으면 그 연봉이면 5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가 감독과 주장이 파문을 당했는데 주전 선수가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문진 사무처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찾아볼 수 없고 양식과 양심도 찾아볼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의 사유가 아까 이야기하신 쟁점이 되는 부분을 빼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일단 중대하고, 또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드렸는데도 보셨다시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을 만큼 파렴치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신분이기 때문에 해임이다, 정직이다 이런 것이 없지만 통상 준거의 틀에 입각해서 일단 임명을 이사장께서 했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임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 다른 이사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권혁철 이사

-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해임입니까, 해고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 유기철 이사

- 임명했으니까 해임이지요.

○ 권혁철 이사

-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했지 않습니까? 해임과 해고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 유기철 이사

- 제가 해고라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고라는 이야기를 언제 했습니까?

○ 권혁철 이사

- 이것이 해임인지, 해고인지 정확히 하고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유기철 이사

- 해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권혁철 이사

- 해임입니까?

○ 유기철 이사

- 예.

○ 권혁철 이사

-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왜 했습니까?

○ 유기철 이사

-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제가 건의한 것입니다.

○ 권혁철 이사

-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한 것 아닙니까?

○ 유기철 이사

-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했었는데...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회를 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입니까?

○ 권혁철 이사

-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해임인지 해고인지, 제 생각에는 해고가 맞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유기철 이사

- 임명의 반대말은 해임이지요.

○ 최강욱 이사

- 법상 임명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유기철 이사

- 고용의 반대말이 해고이고.

○ 권혁철 이사

- 그런데 사무처장이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임원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인사위원회도 열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고라고 할 수도 있지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유기철 이사

- 할 수 있겠지만, 인사위원장을 했던 제가 보기에 임명했기 때문에 해임이 맞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제기 하시는 고용의 반대말 해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한 적이 없었

고 인사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은 본인이 자꾸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법률가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일부 또 다수의 노무사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제기하셔서 이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제가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에 넘겨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것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권혁철 이사

- 여기에서는 해임이라는 것이지요?

○ 최강욱 이사

- 예.

○ 유기철 이사

-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의장

-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철 이사

-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도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소명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임 사유라는 것이 이사회에서 근무기간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이사회에서 참여했던 일들, 또 모든 업무 집행들에 대해 문제들을 다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을 방관하다가 뒤늦게 포괄적인 해임 사유를 제시한 것이 해임 사유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해임 사유가 여러 개 나와 있는데 해임 사유로 사실 확인이 안 된 것들이 꽤 많고, 그 부분은 아까 유기철 이사님 말씀대로 제외되어야 할 것인지 확인이 추후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의 태도나 자세 이런 것들은 애당초 해임 사유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처음에 김광동 이사님 소수의견에 말씀 나온 것처럼, 직무유기 부분과 이사회 결의 무시 월권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무유기 부분 관련해서는 대부분 내용들이 이사회 간사로서 이사회 절차 과정에서 이사회와 함께 회의하면서 이루어졌던 일들인데, 직무유기가 되려면 해당 직무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무처장이 회의 중에 한 언동, 태도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회의 절차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사무처장만의 고유한 책임으로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가려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사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모든 업무가 다 사무처장 탓이다,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은 아까 사무처장도 잠깐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사로서 관여했던 일 자체에 대해 일부 저희들 책임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들이 자기 책임

을 모면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사회 결의 무시와 월권 부분들은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한 사무처장의 직무에 대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사회 회의 외에 많은 업무들이 이사장 지휘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고 또 그때그때 개별 이사들의 의견 제시를 통해 업무를 수정하거나 수행한 부분도 있는데 모든 것들이 사무처장이 단독으로 한 것처럼 사유를 잡는 것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무처장도 법상 간사로서 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의견 개진이나 표명, 회의 진행에 있어서 보조하고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다 사무처장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찾아서 해임 사유로 거론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해임 사유 자체가 특정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보입니다. 더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이혼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 사유에 관해서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서 증언하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신부는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앞으로 잘 살라고 이야기한 데 대해서 ‘예’라고 흔쾌하게 대답하지 않았지요?”라는 부분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이 결별하다 보면 과거의 지난 모든 사유들을 뒤집어 찾아서 결국은 결별을 목적으로 해서 사유를 뒤에 갖다 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과실 잘못도 있겠지만 과거의 모든 지난 것을 찾아서 모든 책임을 돌려서 해임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특정의 해임 사유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평소의 태도 자체를 문제 삼는 식이고, 중간에 거짓말을 했니 안 했니 논의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종교재판도 아니고 업무와 관련해서 논해야 할 것들을 이런 식으로 논하는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물론 이사장이 바뀌셨기 때문에 사람을 내보겠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것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우리도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는 서로 간에 잘 협의해서 이 문제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광동 이사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무혁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소명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총괄적으로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것이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의 제시였을 뿐이지, 이것이 한 사람에 대한 인사사항의 처분을 내릴만한 특정된 중대한 위법행위 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가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그것에 대한 경중의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사실관계가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혹은 다툼이 있는 것들로 사유가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임무혁 처장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을 나열한 것이지, 징계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의 나열이다, 무슨 거간꾼이다, 엉터리다, 마음대로 주물렀다, 음해했다,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징계 사유라기보다는 징계 사유서 자체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거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현 상황에서는 지금 제기

되어 있는 징계 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최강욱 이사

-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들었고, 또 최종 결정하시는 데 참작해야 할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해임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어떤 사유가 제기됐는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여기 와서 항목별로 다 반박하는 것을 봐도 사유가 특정된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특정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사무처장을 해임시킬 수 있는 사유로 생각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에서 아직 명확하게 증거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지요. 아까 본인이 소명 과정에서 제기한 인터뷰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파일 개수가 몇 개였다, 몇 개였다 이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업무지시를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더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짜 골프접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확인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사무처장의 해임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이 직무유기 부분, 허위발언 부분, 정파적인 업무태도,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월권을 저지른 부분, 업무를 태만히 한 부분, 또 불경한 업무태도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또 일부 인정한 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역대 어떤 사무처장보다도 불편부당하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태도로 일관해왔고 진실되지 않은 자세를 보였다는 점도 역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처를 통할해서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을 집행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이 중간중간에 하지 말아야 할 발언, 부적절한 언행 등을 통해 이사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 점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정파적인 업무태도라는 것이 사무처 업무처리와 연계되어서 업무에 즉각적인 처리들이 지연되는 일을 가져왔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관해서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조합해서 나열한 것은 권리입니다만,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속기록 보존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 보셨듯이 계속 뻗은 사실을 부인으로 일관한 점들은 아직도 여전히 거짓에 기대려는 마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본인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런 정상적인 절차 이후에 다른 협의 과정을 통해 본인의 거취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인간적으로 피력해 줬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다 그렇지 않다는, 소위 쉽게 말하면 개선의 정이 없는 태도로 일관하셨습니다. 해고 관련 사건이나 징계 관련 사건에서 여러 이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법원이나 여타의 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상태에서 동료로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해임 외에 다른 사유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불가능하면 해임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

금 사안에 대한 태도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상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이사장님을 보좌해서 방문진의 사무처장으로서 재임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적절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대립이 있는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을 제외한 여타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 다른 이사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 권혁철 이사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기에 해임이라는 징계 사유로 들어있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정파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파적 입장에서 사유가 상당 부분 열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사무처장 징계 사유라고 되어 있는 문서 1페이지를 보시면 <북한주민 방송지원 사업의 직무유기>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북한주민 방송지원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시비로 다수의 이사진에 의해 강행된 반쪽짜리 사업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 반쪽짜리 사업이지요? 이사회 결의를 거친 온당한 사업이었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6페이지를 보시면 <업무 태만> 해서 '자신을 돌봐주는 뒷배밖에는 안중에도 없음을 자복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정파적이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징계 사유를 작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징계사유로 타당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고, 서로 한두 개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팩트 자체가 징계 사유, 특히 해임의 사유가 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 안에 대해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강욱 이사

- 일부 객관적으로 지나치거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은 결정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사유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 이인철 이사

-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절차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명 자리에서 반론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리고 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들 중에 보면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립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소명 과정에서 잘 보셨다시피 사실은 세 분 이완기 이사장님, 유기철 이사, 최강욱 이사님과 의견 대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 분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해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소명 절차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사실 자체도 그렇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자라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립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서 서로 정파적인 주장들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세 분은 이 절차에 있어서 제척되어야 하

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점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순 이사

- 세 분이 제척되어야 하면 여기 계신 세 분도 제척되어야겠네요.

○ 최강욱 이사

- 뽑은 분들이야말로 바로 제척 사유지요.

○ 이인철 이사

-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유,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 최강욱 이사

- 제척이나 회피의 여부는 적격과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유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드러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시는 것까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척되어야 한다면 뽑아놓은 사람들이 해임안 자리에서 당연히 제척되는 것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 이인철 이사

- 아무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김광동 이사

-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나온 사유, 소명 그다음에 소명 과정 및 이후에 전개된 논의까지 전체를 검토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최종 판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원래 이사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또 해임 사유로써 적절치 않고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의사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이 부분의 최종 결심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장님이 하셔서 동의를 우리에게 구할 때 동의·부동의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내가 이러저러한 결과와 소명과 논의의 결정을 봤을 때 나는 해임을 하겠다면 해임 동의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임 동의를 어떻게 할지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해임 동의를 하기 전에 더 검토하고 협상 내지는 다른 절차를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임에 대한 동의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지금 사무처장의 직무가 공석이 된 것이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판단해서 의사결정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징계 건의와 관련해서 논의가 됐는데 일단 결정사항으로 해임 건의가 나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사 분들의 많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동의 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처장을 선임할 때 이사회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 나서 그것에 따라 제가 의사결정을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까 유기철 이사께서 인사위원장으로 제안했으니까,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징계 사유와 관련된 논의는 표결 사항이 아니고 이사장님이 '내가 임무혁 처장을 해임하겠으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해야 합니다.

○ 의장

- 동의하는 부분은 표결 절차를 거쳐서 동의 여부를 묻는다는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무슨 사항을 표결하는 것입니까?

○ 의장

- 해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정리하면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이사님 말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전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법규상으로는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임할 때도 동의를 거쳐 해임한다고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는 이사장께서 먼저 해임 의사를 표명한 다음에 동의를 구하라면 그것은 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후 추인의 절차가 되고, 법률상의 용어로 동의라는 것은 사전 동의지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지금 징계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는데 이 징계와 관련된 논의를 최종적으로 해 보니까 그동안 소명과 사유와 논의 결과를 봤을 때 이사장님이 '나는 이 결과를 다 지켜보고 또 검토해 보니 오늘이든 다음이든 나는 해임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거나 판단할 수 있지요.

○ 의장

- 지금 해임 제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해임 사유가 제시됐으니까….

○ 김광동 이사

- 제안은 이사장이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 최강욱 이사

- 아닙니다.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이 제안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 유기철 이사

-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안건이 나왔으니까 안건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최강욱 이사

-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동의는 거쳐야지요.

○ 이인철 이사

- 정리하자면 안건으로 나와서 해임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김 이사님 이야기가 해임 안건의 가부를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 최강욱 이사

- 그렇지요.

○ 이인철 이사

- 동의를 구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예.

○ 김경환 이사

- 그러면 동의 여부를 물어보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최강욱 이사

- 그리고 개별적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동의를 구하시지요.
- 김광동 이사
 - 무엇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한 주문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장
 - 지금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주문이 무엇입니까?
- 유기철 이사
 - 해임을 요청한다고 제가 동의를 구했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그것은 이사장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유기철 이사
 - 뭐 이사장만 합니까? 동의는 이사들이 하는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법에 없는 것을 한다고 하십니까?
- 유기철 이사
 - 무슨 법에 없는 것입니까?
- 최강욱 이사
 -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동의하기 때문에 해임을 요청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는 해임 사유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동의가 되면 그 사유를 판단해서 이사장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만약에 그 안이 인사위원회 내지는 인사위원장의 어떤 판단을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별도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유기철 이사
 - 인사위원회가 해체됐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넘기면서 인사위원회가 없어지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들 의결했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그래서 어찌자는 이야기입니까?

○ 유기철 이사

-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인사위원장 자격을 찾고 그렇습니까?

○ 김광동 이사

- 그런데 왜 인사위원장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 유기철 이사

- 뭐요?

○ 김광동 이사

- 인사위원장으로 설명을 하십니까?

○ 최강욱 이사

- 아니지요. 인사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니까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 유기철 이사

- 이쪽으로 일단 그것은 일단락이 된 것 아닙니까? 다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딴 소리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여기에 유기철 인사위원장으로 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 유기철 이사

- 그것은 약식으로 쓴 것이지요, 그냥 전임인데.

○ 김광동 이사

- 인사위원장으로 발언하고 제안해 놓고 나서...

○ 유기철 이사

- 그래서 제가 해임을 동의 요청한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인사위원회가 해체됐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무슨 절차도 없고...

○ 유기철 이사

- 그쪽은 동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마음대로 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경우든지 판단할 테니까요.

○ 이인철 이사

- 이사장님이 동의를 구하시면 거기에 대해 동의·부동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 김광동 이사님 말씀은 제가 꼭 해임 건의를 해서 그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김광동 이사

-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사장님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 의장

- 지금 유기철 이사께서 해임 제안하셨고….

○ 김광동 이사

- 제안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지요.

○ 의장

- 제안하셨고, 제안을 왜 못 합니까? 제안할 수 있지요. 제안이라는 것이 의견이지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제안 아닙니까?

○ 유기철 이사

-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제가 유기철이라는 이사가 제기한 건에 대해 제가 동의·부동의를 해야겠습니까?

○ 의장

- 그럴 수 있지요.

○ 유기철 이사

- 지금 부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의장

-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이사 분들의 의견을 거쳤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최강욱 이사님, 정리해 주십시오.

○ 최강욱 이사

- 아까 정리했지 않습니까? 법상 이것은 사전 동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추인의 형태가 되면 이상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임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그냥 구두로 구하시고, 저희가 의결해서 해임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무기명 투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구하셔서 이사장님께서 해임 사유를 확정하셔서 해임 결재를 하시면 해임이 되는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해임 결정을 내릴 테니까 동의해 주십시오'라는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자 판단할 수 있지요.

○ 의장

-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김경환 이사

- 정식으로 이야기하시고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주문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 최강욱 이사

- 해임 결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동의를 구해 달라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다음에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사장님의 권한이고, 거기에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 김광동 이사

- 법조문을 다시 한 번...

○ 이인철 이사

-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장이 임명하시는 것이니까 동의를 얻어서 이사장님이 해임하시고...

○ 의장

-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니까요.

○ 최강욱 이사

-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임명권이 이사장님께 있습니다. 해임권도 이사장님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동의와 부동의를...

○ 의장

-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 최강욱 이사

- 보십시오. 대법원장을 국회의 동의를 구해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법원장을 이 사람으로 하고 싶다고 국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동의하면 그다음에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대통령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그 제안서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인사위원장님의 의견, 징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해임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 최강욱 이사

-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해임에 관한 논의를 해서 이사장님이 해임 사유에 대한 해임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면 그것이 동의 절차이고, 후에 해임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 결정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 이것이 사무처장에 대한 최종 결정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처장도 여기에서 선출한 다음에, 임명한 다음에 또 동의를 구하고 하실 것입니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 이인철 이사

- 무슨 차이나 하면 해임 사유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것이 그것이지요. 선임도 선임 사유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지금까지는 징계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징계 수위에서 '이것은 해임이다, 나는 해임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십시오' 그 주문을 내시면 그에 대한 찬반이 있는 것이지요.

○ 유기철 이사

- 김 이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해임 결의 건이 아니고 '징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갔던 사유서도 징계 사유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해임인지 정직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김광동 이사

- 최종 판단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 유기철 이사

- 그렇게 해서 보낸 것인데, 그래서 오늘 와서 소명이 됐고 그 징계에 대해 동의·부동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 이사 자격으로 오늘 보니까 별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분은 징계 가운데에서 가장 중한 해임이 적절하다'라고 제가 제의를 드린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그것은 이사장님께 제의를 드린 것이지요.

○ 유기철 이사

- 이사장께 제의했던 이사회에 제의했던 제의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동의해 주면 나중에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든 뭐든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되는 것입니다.

○ 이인철 이사

- 국회에서도 임명할 사유를 제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 유기철 이사

- 사유를 다 제시했지 않습니까?

○ 이인철 이사

- 임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이입니다.

○ 김광동 이사

- 간단한 것을 가지고...

○ 유기철 이사

- 뻔한 것을 가지고 시비를 붙으니까 그렇지요.

○ 최강욱 이사

- 워딩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이사 분들의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그렇게 정리해서 손들고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신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 유기철 이사님께서 제안하셨고 징계에 관련된 논의한 결과 해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몇 분 이사들이 동의하셨고, 또 몇 분 이사들은 이야기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해임 동의 여부를 표결을 통해 결정하겠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예.

○ 의장

- 동의 여부를 여기에서 결정하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해임하겠다는 판단을 이사장님이 하신 것이지요?

○ 의장

-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김광동 이사

- 제안은 제안할 수 있는 것이고, 판단은 이사장님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의장

- 제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최강욱 이사

- 해임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의장

- 저도 해임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이사장님께서 해임하시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 의장

- 동의하는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그것은 이사가 동의하는 것이고요.

○ 의장

- 유기철 이사님이 제안하셨고, 최강욱 이사님이 동의하셨고, 김광동 이사님과 이인철 이사님,

권혁철 이사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고,

○ 김광동 이사

- 최종 주문은?

○ 의장

- 나머지 두 분 이사님들은 말씀을 안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 자리에서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하니 그것을 포결의 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됐습니까?

○ 최강욱 이사

- 그 결정을 인사명령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 의장

- 최종 결정은 제가 인사명령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 이인철 이사

- 그렇게 하시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장

- 왜 할 필요가 없습니까?

○ 이인철 이사

- 그렇지 않습니까? 해임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됐는데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 의장

- 제안이 들어왔고, 그 안건에 대해서….

○ 최강욱 이사

-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 이인철 이사

- 여기에서 사유의 적부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해임 여부 동의를….

○ 이진순 이사

- 해임에 동의하는지 마는지를 포결로 이야기해 달라는 말씀 아십니까?

○ 권혁철 이사

- 해임하고자 하오니...
- 이진순 이사
 - 그렇게 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 권혁철 이사
 - 본인께서 '이사장으로서 나는 해임하고자 하오니 동의를 구합니다'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 최강욱 이사
 - 같은 말입니다.
- 권혁철 이사
 - 아닙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렇게 구했고, 제 말씀은 '해임이 되는 것은 인사명령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 권혁철 이사
 - 이야기가 다릅니다.
- 최강욱 이사
 - 무슨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이인철 이사
 - 최강욱 이사 말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똑같이 권 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최 이사 말씀하신 것처럼 해임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의장
 - 그런 것이지요.
- 최강욱 이사
 - 해임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고, 최종 해임 결정은 인사명령으로 바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어디가 이상합니까?
- 이인철 이사
 - 다르지요.
- 최강욱 이사

- 어디가 이상한 것입니까? 임명하는 것에 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임명할 때도 저희가 후보자를 놓고 면접 다 해서 마지막에 결정하면….

○ 권혁철 이사

- '임명하고자 하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강욱 이사

- 예. 그렇게 하면 바로 임명이 되는 것입니까?

○ 권혁철 이사

- 그러면 '해임을 하고자 하오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최강욱 이사

- 해임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권혁철 이사

- 아니지요. 지금 다른 이야기를 했지요.

○ 이인철 이사

- '해임 여부에 대해서'라는 것은….

○ 최강욱 이사

-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 의장

- 제가 여기에서 '해임하고자 하오니' 하면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를 구해야지요.

○ 김광동 이사

- 그러니까 동의할지….

○ 의장

- 동의를 구해야지요. 해임 여부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 최강욱 이사

- 왜 지엽말절인 것을 가지고….

○ 이인철 이사

- 해임 여부가 아니라….

○ 김광동 이사

- 해임 여부가 아니고 해임이지요. 왜 자꾸 여부라고 하십니까?

○ 이인철 이사

- 해임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구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판단권이 없고 이사장이 판단하면 그 판단 부분에 대해 동의해 주거나 동의해 주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지금 세 분이 이야기하신 것은 핵심은 그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임의 결정은 이사장님이 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사장님이 진다는 이야기는….

○ 김광동 이사

- 우리는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사장님은 제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환 이사

- 이것을 명확하게 워딩을 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 권혁철 이사

-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 이인철 이사

- 왜냐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김광동 이사

- 저는 규정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해임하고자 하오니'와 '해임 여부'에 관해서 이렇게 논쟁하시는데 해임 여부가 무엇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우리는 해임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 최강욱 이사

- 아니지요. 원칙적으로 부동의를 되면 해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동의에 해임 여부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무슨 소리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우리는 해임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해임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러면 선임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선임할 때는 선임하고자 하오니...

○ 김광동 이사

- 여러 절차를 거쳐 내가 이 사람을 사무처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동의하거나 부동의하는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래 놓고 나중에 인사명령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동의에 귀속되는 것입니까? 상관없지요?

○ 이인철 이사

- 본인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권혁철 이사

- 그러니까.

○ 최강욱 이사

- 무슨 말이냐고요?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이 이사장님께 있지요? 그것을 바깥에 표현하기를 어떤 형태로 표현합니까?

○ 김광동 이사

- 인사를 했는데 동의를 못 받으면 그 인사 안은 철회되는 것입니다.

○ 최강욱 이사

- 인사명령을 먼저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 김광동 이사

- 예.

○ 최강욱 이사

- 아니지요. 인사 안을 이야기했는데 논의가 안 되면 인사명령을 못 내는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그렇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지금 해임 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해임 여부에 대해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따라 해임 명령이 되면 해임이 되는 것이고….

○ 김광동 이사

- 왜 자꾸 ‘여부’라고 하십니까?

○ 최강욱 이사

- 부동의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해임해야 하니까 동의하라고 하면 ‘동의만 해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 김경환 이사

- 일단 세 분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그런 뜻이라고….

○ 최강욱 이사

-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마찬가지로,

○ 권혁철 이사

-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 최강욱 이사

-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 김경환 이사

- 예. 그것이 어려운 것 아니니까….

○ 최강욱 이사

- 시비를 위한 시비를 가지고….

○ 권혁철 이사

- 그것 어려운 것 아닌데….

○ 이진순 이사

- 이사회에서 제기된 해임 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표명해 달라고 하시면….

○ 김광동 이사

- 그것은 이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 김경환 이사

- 알겠습니다.

○ 의장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주문을 명확히….

○ 의장

- 유기철 인사위원장, 지금 인사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만 전임 인사위원장이니까 책임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일단 인사위원장께서 해임을 제안하셨고 최강욱 이사님이 동의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동의를 안 하셨고, 또 나머지 몇 분은 말씀하지 않고 계신데, 아무튼 의사결정을 해야 하니 임무혁 사무처장을 해임하는 것과 관련해서 동의 판단을 여기에서 해야 하니까 일단 동의에 대한 절차를 표결로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이사 있음) 표결 준비해 주십시오.

○ 간사

- 이것은 거수로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밀투표로 어차피 안 하실 것이고 거수로 하시는 것이….

○ 최강욱 이사

- 결정하는 것이니까 거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 거수로 해도 되겠습니까?

○ 김광동 이사

- 예, 동의 여부니까요.

○ 의장

- 그러면 해임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다섯 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 김광동 이사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의장
- 세 분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임무혁 사무처장을 해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 권혁철 이사
-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이 맞습니까?
- 이인철 이사
- 해임하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하겠습니다'이지요.
- 권혁철 이사
- 수정하지요.
- 의장
- 일부 표현상 문제가 있는 것들은 수정하고 또 쟁점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확인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해임 결의문을 작성해서 인사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강욱 이사
- 방금 임무혁 사무처장 해임 동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 간사
- 예.
- 의장
- 사무처장이 공석되었기 때문에 새 사무처장의 임명이 시급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텐데, 일단 간사께서 과거 전례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이사님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일단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부터...

○ 최강욱 이사

- 절차에 관한 문제니까 해임 명령이 나면 인사명령 이후에 전례대로 공모 과정을 거쳐서...

○ 김광동 이사

- 전례대로 해 주십시오.

○ 최강욱 이사

- 공모 과정을 거쳐서 후보자를 압축한 다음에...

○ 간사

- 3가지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결의사항은 아닙니다만 항상 이사장님께서 직접 지명하셔서 동의를 구하신 방법이 하나 있었고, 이사님들께서 추천하셔서 몇 분이 되시든 간에 그분들 간 후보를 좁혀서 지난번 임 처장의 경우입니다만 인터뷰를 하셔서 선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완전 공모를 통해 선임하는 3가지 방법으로 3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어떤 것이 나올지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한 제일 최근의 안이 공모의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해 왔으니까 공모 방식을 취해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 공모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완전 공모 방식은 저희가 한번 해 봤었고, 제한 공모이기는 하지만 이사님들 추천에 의한 공모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이사에 의한 추천 공모도 괜찮고 완전 공모도 괜찮고 2개 다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저는 공모제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원하고 뽑으면 되지요.

○ 의장

- 완전 공모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간사

- 추천과 공모...

○ 최강욱 이사

- 지금 병행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 김광동 이사

- 추천을 받아도 좋고, 추천하면 추천서를 덧붙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공모면 본인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 간사

- 완전 공모로...

○ 김광동 이사

- 예.

○ 최강욱 이사

- 일반 공모로 하되 추천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서를 첨부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 간사

- 죄송합니다. 일정을 제가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음 이사회가 18일이고 그다음 이사회가 2월 1일인데 2월 1일은 실제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업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미력한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조기에 해서 새로운 분이 새롭게 MBC 관련 업무를 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일정을 고려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보통 공모로 할 경우에는 숫자 배수를 줄여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이어서 두 번에 걸쳐 진행하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오늘 확정해 주시면 사무처에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기철 이사

- 배수로 뽑는 임시이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 간사

- 3배수로 하실지, 2배수로 하실지 그것은 정하셨습니다.

○ 의장

- 일단 방식은 완전 공모 방식으로 바뀐 것이지요? 이사 추천도 되고...

○ 김광동 이사

- 전임 처장의 선임방식과 똑같이 하시지요.

○ 의장

- 추천도 포함돼서 공모 방식...

○ 김광동 이사

- 예, 추천 포함입니다.

○ 간사

- 좌천, 타천으로 공모하는데 날짜를 열흘 정도 하고, 그러면 18일인데 18일에 숫자를 줄이는 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번….

○ 이진순 이사

- 오늘이 4일이니까….

○ 김광동 이사

- 공모기간이 열흘은 되어야 하는데, 어차피 18일밖에 안 됩니다.

○ 간사

- 아니지요. 14일이나 15일이면 바로 되고 3배수에 줄이겠다면 본인에게 PT자료를 준비해 오라고 해서 하면 되지요. 빨리 조기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순 이사

- 그러면 15일쯤 임시이사회를 해서….

○ 김광동 이사

- 좋습니다. 15일에 하시지요.

○ 이인철 이사

- 그러면 공고기간을 일주일….

○ 간사

- 내일 아침부터 나갈 수 있도록 해서 14일까지….

○ 의장

- 날짜는 15일로 하고, 시간을….

○ 간사

- 15일에 임시이사회 하고 18일에 인터뷰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사 있음)

○ 유기철 이사

- 15일 몇 시요?

○ 간사

- 배수 줄이는 것은 오래 걸릴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오후로 하시겠습니까?
- 이진순 이사
 - 오후로 하면 됩니까?
- 유기철 이사
 - 3시?
- 최강욱 이사
 - 월요일 2시로 하시지요.
- 간사
 - 2시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사 있음)
- 의장
 - 2시요?
- 간사
 - 14시입니다.
- 최강욱 이사
 - 15일 2시.
- 간사
 - 오늘 품의를 해서 5일에 공모 시작을 해서 14일까지 공모하고 15일 오후 2시에 배수를 줄이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18일에 인터뷰해서 확정 짓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동의합니다. 다만, 만약 가처분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간사
 - 그것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 김광동 이사
 - 상관없이?
- 간사
 - 상관없습니다.

○ 이진순 이사

- 그런데 절차는 이사장님 명의의 인사발령이 난 후에 공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간사

-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 유기철 이사

- 오늘 준비해서 고칠 것이 있으니까 내일 중으로 해서 내일 저녁부터...

○ 간사

- 그러면 공모는 내일 오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기철 이사

- 준비해 놓았다가 내일 저녁에...

○ 간사

- 이번 주 내로, 일주일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 유기철 이사

- 그러면 3배수로 해도 똑같이 5분씩 PT 합니까? 시간을 줄이지요.

○ 간사

- 그것은 결정하시겠습니까?

○ 유기철 이사

- 15분?

○ 김광동 이사

- 그것은 15일에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15일에 3배수 줄여놓고 PT를 시킬 것이니까.

○ 이인철 이사

- 서류로 하는 것이지요?

○ 김광동 이사

- 서류로 3배수 줄이는 것입니다.

○ 이인철 이사

- 그러면 서류를 미리 그날 와서 봅니까?

○ 최강욱 이사

- 공모할 때 PT 준비해야 할 것인지 알려 주어야지요.

○ 김광동 이사

- 아니지요. 금요일 5시든 4시든 마감하면 주말에 우리에게 보내 주면 검토….

○ 유기철 이사

- 공고할 때 공개 여부와 시간을 알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간사

- 'PT 한다'고만 알려주면 되고, 시간은 저희가 15일에 3배수로 줄인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최소한 'PT 한다'는 것은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의장

- 18일 정기이사회가 오후 2시입니다. 사무처에서는 공모와 관련해서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8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 의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MBC 이사 해임 결의건

○ 의장

- 다음은 'MBC 이사 해임 결의 건'입니다. 일단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광동 이사

- 특별한 일 없으시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공개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이사 있음)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MBC 이사 해임 결의

건은 지난번 회의 연장선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간사께서 안건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 김광동 이사

-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MBC 이사 해임은 이사회가 결정하는 권한이지요. 그렇다면 이사 해임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그 결의안은 누가 그 결의안의 제출자냐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없습니다. 5인 명의로 하든지, 이사장 명의로 하든지, 이사회에 대한 해임 결의인데 결의안 제출자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 지난번 회의 때 김광동 이사님이 참석하셨다가 퇴장하셔서...

○ 김광동 이사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의장

- 그 이후에 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이미 해임 결의를 논의하기로 결정됐었지요.

○ 김광동 이사

- 결의는 좋은데 이 결의안 제출자, 제안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 의장

- 제안자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지요.

○ 이인철 이사

- 다섯 분이라는 것이지요?

○ 의장

- 예, 다섯 분.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여기에 5명의 연명을...

○ 의장

- 아니지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무슨 5명입니까?

○ 김광동 이사

-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 의장

- 그날 이사회를 했고….

○ 김광동 이사

-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거나 결의안이 제출되면 법안 발의자와 결의안 제출자가 명확하게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요. 그래야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그것에 대해 서로 토론이 가능한 것이지, 법안이든 결의안이든 제출자가 없이 이것을 사무처장에게 제안하라고 했습니까?

○ 의장

-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 최강욱 이사

-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과 달리 해임 결의 건으로 제출될 당시에 김광동 이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안한 이사들이 명기가 돼서 제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적하신 문제는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이사장님이 사무처를 통해 이사장님이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출된 안건으로 놓고 토의한 것으로 정리되는 것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이인철 이사

- 이사장님이 사무처를 시켜서 이사장이 안건을 올린 것으로….

○ 최강욱 이사

- 애초에 사무처에서 올린 안건은 다 이사장님 안건 아닙니까?

○ 이인철 이사

- 이사장님 안건이다?

○ 최강욱 이사

- 예.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이사장님이 속기록에 남게 이것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은 이사장 본인이 제안한 제출한 MBC 이사 해임 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이렇게요.

○ 의장

- 그것은 속기록에 집어넣겠습니다.

○ 김광동 이사

- 그러면 제 말씀에 동의하신 것으로….

○ 의장

- 예.

○ 김광동 이사

- 이사장 제안한….

○ 의장

-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속기록에 남으니까….

○ 김광동 이사

-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제안하신 MBC 이사 해임 결의 건이지요.

○ 의장

- 예.

○ 이진순 이사

- 지난번 회의 때 이미 이사장님이 제안하고 사무처에서 문서화해서 이사회 논의에 붙여졌습
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렇지요.

○ 이진순 이사

- 거기에 동의하는 5명의 이사가 오늘 이 건에 대해 의결하자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 김광동 이사

- 다 좋은데 지금 이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안이나 결의안에는 이름이 있
어야 합니다.

○ 최강욱 이사

- 방금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 의장

- 김광동 이사님, 여태까지 이사회를 한두 번 해 보신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들이 제안한 안건을 제외하고 이름이 거기에 나와 있는 적이 있었습니까?

○ 권혁철 이사

- 다 있었지요.

○ 김광동 이사

- 지금까지 모든 결의안에는 결의 제출자가 있었고, 아니면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유기철 이사

- 그만 하고 빨리 하지요.

○ 김광동 이사

- 정리됐습니다.

○ 간사

-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안건은 지난 12월 28일 제13차 임시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고, 그날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 회의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MBC 이사 해임 대상자 5명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이와 관련해서 재논의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내서,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날 말씀드린 것은 오늘 5명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중 3명의 이사님이 도중에 사임하셨고, 최기화 이사님과 김도인 이사님 두 분이 오늘 오셔서 소명해야 하는데 오전 중에 직접 본인이 오시기보다는 소명서로 대신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사회 개시 전에 놓아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다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많이 중복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회 해임안 취지는 지난번에도 올렸지만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MBC 본사 비보직 이사 2명은 퇴직위로금 지급이 불분명하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더 이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무임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 중 최기화, 김도인 이사는 관계사 비상임 이사직 사임도 거부하고 있어 관계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안광환,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MBC의 경쟁력, 신뢰도 하락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구 경영진들로서 공영방송 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며, 부당노동행위 등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끼친 책임이 있어 이사직 해임 안을 상정하고자 한다” 각 개별 이사 해임의 대상 및 사유는 공통 해임 사유와 개별 이사 해임 사유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리 다 보내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절약상 생략했으면 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 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오늘 소명을 위해 출석을 했습니까?

○ 간사

- 우편으로 보내 왔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안 오겠다고 의사를 명시했습니까?

○ 간사

- 명시하고 이것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연락을 다 받았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것으로 대체하겠다고?

○ 간사

- 예, 그렇습니다.

○ 김광동 이사

- 서류 소명으로 대체하겠다고...

○ 간사

- 예. 서류 소명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인철 이사

- 이것을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강욱 이사

- 이것을 오늘 냈다는 것입니까?

○ 간사

-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좀 전에 이것을 기자들이 요구해서 기자들에게 공개해도 되겠느냐고 여쭙 봤는데,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지금 받았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기자들에게 본인들의 소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간사

- 예. 지금 막 문자를 받았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그러면 이것을 공개해야 합니까? 논의가 될 텐데.

○ 간사

- 소명서 자체 공개는 아니지만 논의는...
- 김경환 이사
 - 원본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니까...
- 김광동 이사
 - 이사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의장
 - 말씀하십시오.
- 김광동 이사
 - 오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또 제출된 자료의 양도 상당하니, 우리가 15일에 마침 날짜를 잡아놓은 것이 있으니 각자 검토하시고 이것에 대한 논의라고 할까 각자 의견을 피력하는 기회는 15일로 잡고 15일에 혹은 그 이후에 최종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강욱 이사
 - 여타의 절차에 이것이 지연됨으로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노려서 늦게 낸 것은 아닙니까?
- 간사
 - 이 두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방 관계 사 비상임 이사직을 겸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그것은 별도이지 않습니까?
- 간사
 - 이 두 분입니다.
- 김광동 이사
 - 지방사.
- 최강욱 이사
 - 지역사 이사.
- 이인철 이사

- 그것이 아니라 지방사 그것은 지난번에...
- 간사
 - 아닙니다.
- 유기철 이사
 - 별도로 알아서 주총 하기로 했는데,
- 이인철 이사
 -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유기철 이사
 - 이분들이 거기 비상임 이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몇 군데는 지장이 있을 수 있다.
- 간사
 - 사임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가니까...
- 최강욱 이사
 - 지역사 이사는 그때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 비상임 이사는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 이인철 이사
 - 지역사 이사는 그때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되는데,
- 최강욱 이사
 - 다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인철 이사
 - 이것은 본사만 결론 내리면 되니까...
- 최강욱 이사
 -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영향이 없으면 미뤄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정리해야지요.
- 김경환 이사
 - 확인해 보십시오.
- 이인철 이사

- 거기는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 **최강욱 이사**
 - 변경했을 것 같은데, 지역사 임원 이사로 남아 있어 생길 문제가 있는지...
- **간사**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경환 이사**
 - 지금 남아 있는 분이 백종문 씨가 남아 있다고 그때 보고했었던 것 같습니다.
- **최강욱 이사**
 - 그렇지요. 백종문 이사가 남아 있었고, 최기화 이사는 있겠지요. 그때 바꾼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인철 이사**
 - 다 있는데 협의가 끝났으니까 그것은 주총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것까지...
- **김광동 이사**
 - 몇몇 군데 관여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신임 지방사 사장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일정상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경환 이사**
 - 권한대행으로 하고 계신 것이니까.
- **김광동 이사**
 -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는데 신임 사장을 리뷰나 스크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5일 정도면 대충 완료가 될 수 있으니까 크게 지장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 **권혁철 이사**
 - 거기에 비상임 이사직과 우리 이사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 **이인철 이사**
 - 그것은 협의사항으로 해서 끝냈는데...
- **김광동 이사**

- 지방사 주총을 여는데...
- 이진순 이사
 - 뒷부분은 다 별첨 자료라서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쉬시는 동안 읽으시지요.
- 간사
 -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유기철 이사
 - 김 이사님, 조금이니까 빨리 읽으십시오. 이것은 첨부 자료입니다.
- 이진순 이사
 - 앞부분은 두 분이 같은 내용이고 뒷부분은 별첨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두 분은 소명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싫어하시지요? 궁금해서, 억울한 사연을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 김광동 이사
 -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 이진순 이사
 - 이분들이 언론을 적으로 삼으십니까?
- 이인철 이사
 - 이것도 만약 소송을 예상한다면 미리 공격 방법을 밝히기 싫은 것이겠지요. 그것은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해해야지요.
- 이진순 이사
 - 방어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시지, 왜...
- 권혁철 이사
 - 그것이야 모르지요.
- 이진순 이사
 - 그래야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발언할 기회라도 생길 것 아닙니까?
- 간사
 - 업무 진행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이인철 이사
 - 그러면 다음에...

○ 김광동 이사

- 15일에 하시지요.

○ 최강욱 이사

- 그러시지요.

○ 의장

- 그러면 다른 이사 분들 이견이 없으시면 15일 임시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진순 이사

- 그러면 15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어쨌든 이 소명서를 포함해서 해임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결정까지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 의장

- 예.

○ 이진순 이사

- 더 밀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유기철 이사

- 절차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이완기 이사장 명을 받들어서 사무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최 국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다음에 또 시비가 붙을 수 있으니까 한 장짜리 쓰든지 해서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 이인철 이사

- 시비라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 유기철 이사

- 그것이 시비이지 않습니까?

○ 이인철 이사

- 절차상...

○ 유기철 이사

- 5시간 동안 시비가 붙었지 않습니까?

○ 김광동 이사

- 제가 도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 유기철 이사

- 도와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의장

- 다음 이사회는 1월 15일 오후 2시 임시이사회로 개최되겠습니다.

5. 폐회 선언

○ 의장

- 이상으로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폐회】